

「世界貿易機構(WTO)協定の履行에 관한 特別法」

- 法 施行을 위한 協定 및 關係法令現況 -

2000. 2.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6287
등록일: 2001년 6월 20일
기증:

農 林 部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자 료 활 용 안 내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95.1.3)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95.1.1부터 출범한 WTO체제하의 협정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94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동법은 모두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원칙선언 규정이 5개조문(3조1항포함), 시장개방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이 10개조문(3조2항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법중 시행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각 조문별로 “협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기존의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예를 들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의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법인 '관세법'을 개정) 특별법의 시행을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특히 관계법령이 없어 시행령제정이 필요한 동법 제11조제2항의 '생산과 연계하지 아니 하는 소득보조'의 시행을 위하여 '97. 2. 1 제정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통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99. 3. 31 동 규정을 개정하여 '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논농업직접지불제도도 동 규정을 근거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동 특별법의 각 조문별로 시행을 뒷받침해 오고 있는 “협정과 관계법령”을 취합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40여개 관계법령의 규정을 통하여 동법의 시행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은 “협정과 관계법령”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통하여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농림부 농업정책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03-7261~3, 전자우편 : maf.apd@maf.go.kr)

目 次

I. 「世界貿易機構協定の 履行에 관한 特別法」	3
II. 特別法の 構成內容	6
III. 特別法 施行關聯 法令 現況	7
IV. 農林部 所管 特別法 施行관련 法令現況	9
1. 第7條(農林水産物 關稅 및 輸入利益金の 用途)	9
2. 第10條(輸入機關의 지정)	17
3.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 第1項 - 輸出市場 開拓支援	26
4.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 第2項 - 농림수산업 생산자 지원	34
가. 生産統制를 目的으로 한 直接支拂	34
나. 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42
다. 土壤 등 環境保全을 위한 有機農·耕種農에 대한 보조	44
라. 農林水産業 災害에 대한 지원	50
마. 生産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57
5. 第12條(生産者團體의 農林水産物 需給調節事業에 대한 지원)	67
6. 第13條(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의 실시)	71
V. 他部處 所管 特別法 施行關聯 法令 現況	74
1. 第3條(協定상의 權益確保)	74
2. 第4條(補助金에 대한 措置)	81
3. 第5條(民族內部去來)	87
4. 第6條(特別緊急關稅)	92
5. 第8條(國民健康의 보호)	103
6. 第9條(環境의 보호)	116

I. 「世界貿易機構協定の 履行에 관한 特別法」

[法律 第4,858號]

第1條(目的) 이 法은 世界貿易機構設立을 위한 馬拉喀什協定(이하 “協定”이라 한다)을 이 행함에 있어 世界貿易機構 會員國(이하 “會員國”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하고 協定の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被害를 最小化함으로써 國民 經濟의 健全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經濟主權의 보장) 協定の 어느 條項도 世界自由貿易體制의 一員으로서의 우리나라의 正當한 經濟的 權益을 침해하는 것을 容認하는 것으로 解釋될 수 없다.

第3條(協定상의 權益確保) ①政府는 協定の 基本원칙에 따라 權利와 義務를 행한다.

②政府는 協商의 結果가 協定の 基本원칙에 어긋나거나 協定 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品目の 國內 被害가 클 경우 協定節次에 따라 이를 修正하기 위한 協商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4條(補助金에 대한 措置) 會員國이 協定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補助金등에 의하여 輸出을 하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5條(民族內部去來) 南北韓間의 去來는 民族內部去來로서 協定에 의한 國家間의 去來로 보지 아니한다.

第6條(特別緊急關稅) 農林水産物의 輸入物量이 急增하거나 國際價格이 현저히 下落하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許한 稅率을 초과하여 特別緊急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第7條(農林水産物 關稅 및 輸入利益金の 用途) 協定 이행으로 인한 農林水産物 關稅와 輸入利益金は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漁民 所得向上 및 農漁村 발전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第8條(國民健康의 보호) 食品, 그 容器 기타 輸入物品이 檢疫法·植物防疫法, 家畜傳染病豫防法 등 法令이 정하는 細菌·病害蟲 또는 有害物質등을 함유하여 國民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政府는 그 輸入物品이나 이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物品 또는 그 輸入物品을 製造·加工한 製造元의 類似物品에 대하여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第9條(環境의 보호) 特定物品의 輸入으로 인하여 사람·動物의 健康이나 植物의 成長을 害할 環境汚染의 危險이 있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 또는 이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物品에 대하여 그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第10條(輸入機關의 지정) 政府는 農林水産物の 輸入으로 인하여 관련 國內農林水産業이 위축될 위험이 큰 物品에 대하여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政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生産者團體등으로 하여금 輸入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國內支援 정책의 施行) ①政府는 協定 發效후 조속한 시일내에 輸出品에 대한 信用保證과 輸出市場에 대한 情報提供등 協定이 허용하는 輸出市場開拓에 대한 支援制度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協定 發效후 조속한 시일내에 農林水産業의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協定이 허용하는 다음 各號의 支援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1. 生産統制를 目的으로 한 直接支拂
2. 零細農등을 위한 보조
3. 土壤등 環境保全을 위한 有機農·耕種農에 대한 보조
4. 農林水産業 災害에 대한 지원
5. 生産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第12條(生産者團體의 農林水産物 需給調節事業에 대한 지원) 政府는 農林水産物 需給調節 事業을 하는 生産者團體에게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買·備蓄·加工등의 施設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13條(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의 실시) 政府는 協定 이행과 관련하여 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을 施行하여야 하며 協定 發效후 年1回 施行 내용을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4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주) '95. 1. 3 공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부서

II. 特別法の 構成内容

- 本 特別法은 WTO協定 履行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예방 및 구제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것으로서,
- 일반원칙의 선언규정, 시장개방 확대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 농림수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음.

〈특별법 내용별 관련조문〉

구 분	관 련 조 문
1) 일반원칙 선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제3조(협정상의 권익확보) 제1항, 제5조(민족내부거래) - 제14조(시행령)
2)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피 해예방 및 구 제조치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2항(양허수정협상 추진의무) -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 제6조(특별긴급관세) -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 제9조(환경의 보호) -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3) 농림수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 제12조(생산자 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의 실시)

Ⅲ. 特別法 施行關聯 法令 現況

- 本 特別法은 WTO 會員國으로서 WTO 協定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기본전제(제3조1항)로 하여,
- 條文別로 “協定과 關係法令에 따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定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 特別법에 규정된 조문별 關係法令은 다음과 같음

〈特別法 시행관련 法律 및 運用部署 現況(例)〉

이 행 특 별 법	주 요 관 계 법 률	운 용 부 서
○ 제3조2항(양허제 협상)	○ 관세법 제43조의9(양허의 철회 및 수정) ○ 대외무역법 제4장(수입에의한산업피해조사등)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 관세법 제13조(상계관세)	재정경제부
○ 제5조(민족내부 거래)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조약)	통 일 부 외교통상부
○ 제6조(특별긴급 관세)	○ 관세법 제12조의3(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 관세) ○ 관세법 제12조의3의 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 부과에관한규칙	재정경제부
○ 제7조(농림수산물의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1) 관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2) 수입이익금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산림법 등	농 립 부
○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약관리법	보건복지부 농 립 부

이행특별법	주요관계법률	운용부서
○ 제9조(환경의 보호)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정등에관한법률 ○ 식물방역법, 종자산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 제10조(수입기관의 지정)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종자산업법, 인삼산업법 등	농림부
○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환경농업육성법,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등 ○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호법 등	농림부 보건복지부
○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에 대한 지원)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등	농림부
○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 농업·농촌기본법 등	농림부

* 이 표에 예시된 관계법률은 주요 법률만 예시한 것으로 관계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모든 관계법률이 망라된 것이 아니며 관련전체 법률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음.

IV. 農林部 所管 特別法 施行관련 協定과 法令現況

1. 第7條(農林水産物 關稅 및 輸入利益金の 用途)

□ 特別法 規定 □

第7條(農林水産物 關稅 및 輸入利益金の 用途) 協定 이행으로 인한 農林水産物 關稅와 輸入利益金は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漁民 所得向上 및 農漁村 발전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가. 農林水産物 輸入 關稅

(1) 시책추진 현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물에 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 동 법 제4조에 규정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등 세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2) 關係法令

法 令 名	關 聯 條 文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94. 8. 1 전문개정, 99. 2. 5 개정)	(歲入根據) 第4條(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入 및 歲出) ①農漁村構造改善 事業計定の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5. 國債法에 의한 國債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 金 및 預受金 6. 기타 收入金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4條의2(林業振興事業計定の 歲入 및 歲出) ①林業振興事業計定の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山林법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대체조립비, 동법 第2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 및 동법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수입이익금 1-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4. 기타 收入金 <p>第6條(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①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關稅액의 전액과 貂料관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배합貂料 및 別표 2의 畜産기 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附加價値稅額의 전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 輸入林産物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關稅액전액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p> <p>②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 轉入 받을 수 있다.</p> <p>(歲入財源의 歲出用途)</p> <p>第4條(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入 및 歲出) ②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원리금 상환 3. 法律 第4228號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漁村發展債權의 원리금 상환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の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林業振興事業計定の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償還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の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p>* 第6條1項關聯 別표1의 범위(關稅額 轉入對象 輸入 農林水産物)</p> <p>- 關稅率番號(HS) 1類~24類의 農林水産物</p> <p>25類(식재), 35類(변성전분), 38類(수지), 40類(천연고무), 41類(원피·가죽), 43類(모피), 44類(목재), 45類(코르크), 46類(농세공품), 48類(벽지), 50類(누에고치, 생사), 51類(양모), 52類(원면), 53類(아마, 대마, 황마등), 68類(가공석재)</p>

나. 農林水産物 輸入 利益金

(1) 法令整備現況

가) 배 경

- UR협상결과 쌀, 보리, 참깨, 낙화생, 쇠고기등 64개 품목에 대하여 국영무역 등의 수입기관지정, 판매차익(mark-up) 부과근거를 양허표에 반영
- 관세화등 수입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이러한 시장접근물량관리 등 새로운 수입 제도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정비
 - 양곡관리법, 농안법, 축산법, 산림법 등

나) 수입관리 방식의 전환 법령정비 내용

- 국영무역 및 수입이익금 징수근거 설정
 - C/S에 국영무역을 표기한 품목과 수입제한이 유지되어 국영무역이 가능한 쇠고기 등 18개 품목에 대한 국영무역기관 지정 및 수입·판매에 따른 이익금징수를 위한 근거규정을 설정

○ 수입권공매제도의 실시

- 탈지분유, 연유, 전지분유, 참깨, 오렌지, 감귤류 등 12개 품목의 저율관세 수입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납입금을 제시한 수입업체에게 배분하고 납입금을 관련기금의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다) 법령정비현황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양곡관리법 (94. 12. 31 개정)	<p>第13條의2(輸入利益金の 徵收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 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품목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企業豫算會計法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糧穀管理特別會計 또는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の 滯納處分에 관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94. 12. 31개정)	<p>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곡과 맥류중 보리 2.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p>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당해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2조의3제1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제2조의3제2호·제3호에 규정된 양곡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p>
<p>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94. 12. 31, 2000. 1. 28 전문개정)</p>	<p>第16條(輸入利益金の 徵收等) ①農林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内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농안법 시행규칙 ('95. 1. 28, '97. 12. 20 개정)</p>	<p>제3조의3(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 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수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하는 금액</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2. 참기름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하는 금액</p> <p>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축산법(94. 12. 31 개정, 99. 1. 29 전문개정)</p>	<p>第37條(輸入利益金の 徵收等) ①農林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축산법 시행규칙 (95. 1. 23 개정, 99. 9. 7 전문개정)</p>	<p>제43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쇠고기·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납입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2. 기타 축산물의 수급원활과 유통질서 문란방지를 위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p> <p>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양허표상의 시장접근 물량의 경우: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p> <p>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목의 시장접근 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림부 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 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규정된 금액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p> <p>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산림법(94. 12. 31 개정)</p>	<p>第37條(輸入利益金の 徵收等) ①山林廳長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林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진흥촉진법 第18條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納入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산림법 시행규칙(95. 1. 25 개정)</p>	<p>제32조의4(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1. 잣: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p> <p>2. 밤·대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p> <p>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p>

(2) 시장접근물량 수입이익금 징수 및 활용계획

가) 품목별 수입이익금 징수계획

해 당 품 목	수 입 창 구	납입기금명 판매이익금	법 적 근 거
쌀*, 보리*	조 달 청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양 특 회 계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대두*, 녹두*, 팥*, 메밀*,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땅콩*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안 기 금	농 안 법 제10조의4
쇠고기*, 인조꿀, 천연꿀*, 연유 등	축산물유통사업단 또는 축협중앙회	축 발 기 금	축 산 법 제55조의2
잣, 밤, 대추	임업협동조합	농 특 회 계	산림법 제37조
감귤*, 오렌지*	제주감귤협동조합	제 주 감 귤 협 동 조 합 에 지 원	농 안 법 제15조의4
인삼*	인삼협동조합	인 삼 산 업 발 전 기 금	인삼산업법 제20조

* 국영무역 18개 품목, 나머지 6개 품목은 수입권 공매제도 품목

나) 납입기금별 재원의 용도

기금·회계명	재원의용도	법적근거
양 특 회 계	○ 양곡의 매입, 양곡의 비축관리,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개선 등	양곡관리법
농 안 기 금	<용자>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 장려 또는 조정, 수출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자금, 상품성 제고 등 <지출> 농수산물 비축·수매사업,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농산물생산 조정에 따른 지원, 기타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사업	농안법 제47조
축 발 기 금	○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향상 ○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 가축방역, 기타	축산법 제37조
인 삼 산 업 진 흥 기 금	○ 묘삼생산, 인삼경작 및 경작지도, 인삼류의 수출과 그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수매·비축사업 등	인삼산업법 제23조

2. 第10條(輸入機關의 지정)

□ 特別法 規定 □

第10條(輸入機關의 지정) 政府는 農林水産物의 輸入으로 인하여 관련 國內農林水産業이 위축될 위험이 큰 物品에 대하여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政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生産者團體등으로 하여금 輸入하게 할 수 있다.

가. 수입기관 지정에 관한 협정규정과 우리나라의 양허표

- WTO 농업협정상 GATT 17조의 원용한 국영무역에 의한 비관세조치도 모두 관세를 통하여 관세 양허로 전환되었으며,

- 일단 관세로만 양허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주석에 명시된 예외조치 이외의 모든 비관세 조치의 재원용이 금지됨(농업협정 제4조2항).

〈국영무역에 관한 C/S 작성지침 및 협정규정〉

<C/S 작성지침 부속서 3-1항>

1. The policy coverage of tariffication shall include all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¹ such as;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s, variable import levies, minimum import prices,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non-tariff measures maintained through state trading enterprise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nd any other schemes similar to those listed above, whether or not the measures are maintained under country-specific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f the GATT 1947

<WTO 농업협정 제4조>

2. Members shall not maintain, resort to, or revert to any measures of the kind which have been required to be converted into ordinary customs duties¹,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Article 5 and Annex 5.

¹These measures include quantitative import levies, minimum import prices, discretionary import licensing, non-tariff measures maintained through state-trading enterprise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nd similar border measures other than ordinary customs duties, whether or not measures are maintained under country-specific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f GATT 1947, but not measures maintained under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or under other general, non-agriculture-specific provisions of GATT 1994 or of the oth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in Annex 1A to the WTO Agreement

- 다만 농업협정 부속서 5의 특별취급규정(Special treatment)에 의하여, 협상을 통하여 합의되어 C/S에 명시된 품목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의 예외가 인정됨.
- 이에 따라 수입 전망에 대한 국영무역등의 수입기관지정은 협정위반의 소지가 있음.
- 또한 관세화등에 따라 양허된 시장접근 물량은 원칙적으로 저율관세만 부과된 채로 수입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협정상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용지침은 없으나 수입이익금 징수권리와 연계된 수입기관지정은 GATT 제2조의 양허 의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수입이익금·징수 및 수입기관의 지정은 양허대상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러한 관련협정 해석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하여 64개 품목(HS10단위 기준)의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을 GATT 제17조의 국영무역 제도를 원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양허표에 반영함.

(쌀·보리등 85개 품목은 양허표에 명시되었고, 쇠고기등은 수입규제가 유지되는 기한까지 수입관리권을 보유하는 형태)

나. 시장접근물량 수입기관지정 현황

- WTO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개편된 수입관리제도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고, “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부 고시 제99-89호, 99. 12. 21)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1) 법령 정비현황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양곡관리법(94. 12. 31 개정)	<p>第11條(糧穀의 輸出)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을 輸入 또는 輸出할 수 있다.</p> <p>第12條(米穀등의 輸入許可 등). ①米穀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②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糧穀을 輸入하거나 農林部令이 정하는 糧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糧穀의 輸出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推薦物量·推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外國援助機關 또는 外國의 民間援助團體가 제공하는 許可 또는 推薦對象인 糧穀의 輸入을 關係法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農林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協議를 거쳐 輸入認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13條(輸入糧穀의 관리등)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入糧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2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거나 關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糧穀을 輸入하는 者나 輸入된 당해 糧穀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다만, 第1號의 사항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の 賦課·徵收 對象者의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糧穀의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糧穀의 用途制限 3. 輸入양곡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p>양곡관리법 시행령 (94. 12. 31 개정)</p>	<p>제14조(수입의 허가)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분말이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을 사용하여 반죽한 것 <p>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곡수입허가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양곡관리법 시행 규칙(94. 12. 31 개정)</p>	<p>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라 함은 미곡과 맥류중 보리를 말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축산법(94. 12. 31 개정, 99. 1. 29 전문개정)</p>	<p>第24條(畜産物등의 輸入推薦 등)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畜産物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 및 種畜 등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第25條(輸入畜産物の 관리) 農林部長官은 輸入畜産物の 관리·不正流通防止, 기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은 者, 關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 또는 輸入된 당해 畜産物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告示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畜産物の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畜産物の 用途制限 3. 輸入畜産物の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p>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94. 12. 31 개정, 2000. 1. 28 전문개정)</p>	<p>第15條(農産物の 輸入推薦등) ①世界貿易機構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作物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の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使用用途 기타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p> <p>④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を 第13條第2項 但</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 있다.</p>
<p>종자산업법(95. 12. 6 제정) ※ 종자산업법 제정으로 주요농작물 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폐지</p>	<p>第142條(種子の 輸入 推薦)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種子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の 輸入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關聯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종자산업법시행규칙(98. 1. 24 제정)</p>	<p>제118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 등) ①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신고서 및 구비서류 각1부(품종목록 등재대상 식물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적용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용성 시험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p>②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19조(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물량 등)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 수입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추천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p> <p>제120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사료관리법(94. 12. 31 개정)	<p>第5條의2(補助飼料등의 輸入推薦등)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長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補助飼料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飼料등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指定하는 非營利團體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對象品目·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산림법(94. 12. 31 개정)	<p>第36條(林産物の 輸入推薦등)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長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林産物を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山林廳長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山林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産物の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山林廳長이 指定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山林廳長이 정한다.</p>
인삼산업법(99. 1 21 개정)	<p>第20條(人蔘類 市場接近物量 輸入推薦)</p> <p>① 削除 <99·1·21 法5664號></p> <p>②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해당하는 人蔘類를 讓許稅率로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類를 輸入하는 者는 輸入價格과 販賣價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農林部令이 定하는 금액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人蔘産業振興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p>
인삼산업법 시행규칙(99. 8. 7 개정)	<p>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p> <p>① 삭제 <99·8·7></p> <p>② 삭제 <99·8·7></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p> <p>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일까지 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p>
<p>농축산물 시장접근 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수산부고시 제99-89호 99. 12. 21) (관련규정 발췌)</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부 고시 제99-89호</p> <p>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축산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5조의2,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12. 21 농림부장관</p> <p>제1조(목적)이 요령의 목적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이하 “양허관세적용물량”이라 한다)의 배정방식·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부 국영무역</p> <p>제14조(수입창구) 별표 1에 의거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 1의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 : 쌀, 보리 2. 농수산물유통공사 :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생강, 메밀, 대두, 낙화생, 참깨

法 令 名	關 聯 條 文
	3. 축산물유통사업단: 쇠고기 4. 축협중앙회: 천연꿀 5. 제주감귤협동조합: 오렌지, 감귤류 6. (삭제 98. 7. 8) 7.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 제15조(용도의 지정) 제14조에 의해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시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수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5. 8. 31)

(2) 주요 품목별 수입기관지정 현황

관련법령	대 상 품 목	수입방식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	납 입 기 금
양곡관리법	쌀, 보리	국 영 무 역	조 달 청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양 특 회 계
	팥, 대두	국 영 무 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안 기 금
축 산 법	쇠고기	국 영 무 역	축산물유통사업단	축 발 기 금
	천연꿀	국 영 무 역	축 협 중 앙 회	
농 안 법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생강, 대두, 팥(녹두)	국 영 무 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안 기 금
	메밀, 감자 오렌지, 감귤	국 영 무 역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생산 농가에 지원
인삼산업법	인삼	국 영 무 역	인 삼 협 중 앙 회	인 삼 산 업 진 흥 기 금

주) 상기 국영무역관리품목은 주로 내수용 수입물량에 한정되며 외화획득용, 의약품용, 공업용, 사료용, 종자용등 사용용도에 따라 실수요자 추천등의 수입방식을 달리함.

3.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 第1項-輸出市場 開拓支援

□ 特別法 規定 □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 ①政府는 協定 發效후 조속한 시일내에 輸出品에 대한 信用保證과 輸出市場에 대한 情報提供등 協定이 허용하는 輸出市場開拓에 대한 支援制度를 擴充하여야 한다.

가. WTO 농업협정상의 수출지원제도

(1) 개 관

- WTO 농업협정상의 농산물수출지원제도는 농산물수출에 대한 직접지원제도와 지도·자문·검사·시장정보 및 판촉서비스등의 간접지원제도로 분류 가능함.
- 직접지원은 농업협정 제8조 내지 제1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감축 및 금지대상 수출지원, 국제적인 합의 규율에 따라야 할 지원, 개도국에 허용되는 지원으로 구분됨.
- 간접지원제도는 수출보조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국내보조중 허용보조인 일반 서비스지원으로 분류됨.

(2) 수출보조금 지원규율

가) 일반원칙

- WTO 회원국은 WTO 농업협정과 자국 양허표에 명시된 내용에 합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함.(WTO 농업협정 8조)

나)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지원규율과 보조금감축 양허표의 성격

- 다음의 감축대상 수출보조는 감축약속대상임(구체적인 감축약속은 양허표에 제시됨)

- ①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 보조금의 제공

- ② 국내시장의 판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 ③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 ④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 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 ⑤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 보조금

- '86~'92 기준기간동안 수출보조가 없어 감축약속이 제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신규수출보조가 금지됨(농업협정 제9조3항)
- 수출보조 감축약속을 우회하는 수단을 통한 수출지원은 금지됨(농업협정 제10조1항)
- 가공농산물(Incorporated Products)에 지원되는 단위당 수출보조는 그 구성성분이 되는 1차 원료농산물의 단위당 수출보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농업협정 제11조)

다) 국제적인 합의원칙에 의하여 제공가능한 수출지원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 국제적인 규율정립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규율에 따라 제공
 - 현재의 OECD 수출신용 Guideline에는 농산물이 포함되지 아니함.
- 국제식량원조 : FAO의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의무의 원칙”에 따라 수행

라) 개도국 우대

- 개도국에 대하여 상기 감축대상 수출보조 ④,⑤항에 해당되는 수출보조는 감

축의무를 면제함.(농업협정 제9조4항)

(3)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

- 다음의 정부가 직접시행하는 국내보조사업은 비록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시행되는 경우라도 국내보조로 분류되며 허용대상보조임. 다만,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 및 연구결과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는 지도 및 자문서비스
 - 일반적인 검사서비스 및 특정품목에 대한 위생, 안전, 등급화 또는 표준화 목적을 위한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서비스
 - 특정품목에 관한 시정정보, 조언 및 판매촉진을 포함하는 시장확대 및 판매촉진서비스 단,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는 지출은 제외됨.

나. 우리나라의 農産物 輸出支援 關聯 法令 現況

法 令 名	關 聯 條 文
農業·農村基本法 ('99. 2. 5 제정)	第35條(農産物의 輸出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 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94. 12. 31 개정, 2000. 1.28 전문개정)	第57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각호의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 1. 農水産物의 價格調節과 生産·出荷의 獎勵 또는 調整 2. 農水産物의 輸出促進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3. 農水産物の 保管・管理 및 加工</p> <p>4. 都賣市場・共販場 및 민영도매시장의 出荷促進・施設 및 運營</p> <p>5. 農水産物の 商品性 提高</p> <p>6. 기타 農林部長官이 農水産物の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業</p>
<p>輸出保險法 (’94. 8. 3 개정공포) (産業資源部 所管)</p>	<p>第1條(目的) 이 法은 輸出 기타 對外去來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保險으로는 救濟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財産상의 損失을 補償하는 輸出保險制度를 효율적으로 運營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3條(輸出保險의 종류) 輸出保險의 종류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輸出保險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定한다.</p> <p>第8條(契約締結限度)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매년 輸出保險契約 체결(輸出信用保證契約의 締結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한도를 定한다. 다만, 代金決濟期間이 2年을 초과하는 中長期延拂 輸出去來를 대상으로 하는 輸出保險에 대하여는 輸出保險契約締結의 한도의 범위안에서 그 한도를 따로 定하여야 한다.</p> <p>②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保險契約締結의 한도를 定함에 있어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p> <p>第37條(設立) 이 法에 의한 輸出保險事業을 營爲하기 위함 韓國輸出保險公社를 設立한다.</p> <p>第53條(業務) 公社는 輸出保險事業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出保險의 原保險・共同保險 및 再保險 2. 輸出信用保證 3. 基金의 관리 및 運用 4. 信用調査 및 信用情報의 관리 5. 第1號 내지 第4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6. 기타 政府가 委託하는 業務</p> <p>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輸出信用保證의 運營에 관하여는 輸出保險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인삼산업법 (’99. 1. 21 개정)</p>	<p>第23條(人蔘産業振興基金의 設置) 人蔘類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人蔘의 耕作·收買·備蓄 輸出 기타 人蔘産業의 振興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하기 위하여 人蔘産業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p>
<p>인삼산업법시행규칙 (’99. 8. 7 개정)</p>	<p>제10조(기금의 사용) ①법 제23조의 規定에 의한 人蔘産業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用途는 다음 각호의 事業을 위한 보조·용자 기타 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묘삼생산, 人蔘경작 및 경작지도 2. 人蔘류의 수출과 그 價格안정을 위한 출하·수매·비축 3. 人蔘류의 유통·제조·검사 및 가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4. 人蔘의 품종육성 및 우량종묘의 보급과 생산·가공기술, 검사방법 및 약리작용 등의 연구개발 5. 人蔘産業진흥을 위한 조사·홍보 6. 기금의 관리 7. 기타 농림부장관이 人蔘産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業 <p>②제1항 各호의 事業에 대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한다.</p>

다. 우리나라의 農林水産物 輸出保險制度 運用計劃

(1) 수출보험제도 개요

가) 수출보험의 의의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상업보험과 같은 통상적인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을 보상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로서의 비영리 정책보험

- 대상보험

- 신용위험 :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대금결제 지연등의 위험
- 비상위험 : 수입국에서의 전쟁 ·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위험

나) 수출보험의 기능

- 수출거래의 불안제거기능 :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 감소
- 금융보완적 기능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금융을 원활히 공여토록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
- 수출진흥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
 - 보험인수조건(담보 보험의 범위, 담보율, 보험요율)등을 수출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수출자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제한
-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능 : 보험의 효율적인 인수 · 관리를 위하여 해외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 강화

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운영체제

○ 연 혁

- '68.12 : 수출 보험법 제정
- '69. 2 : 수출보험업무 개시(대한재보험공사)
- '79. 1 : 주무부처 변경(재무부 → 상공자원부)
- '92. 8 :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
- '94. 8 : 수출보험법 8차 개정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근거 마련

○ 운영체제

- 감독기관 : 산업자원부
 - 수출보험운영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 수출보험금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보험자 : 한국수출보험공사
 - 신용조사, 보험인수 및 보상등 보험관련업무 수행

라) 수출보험의 운영현황

- 연도별 계약체결 한도 : 수출보험법 규정에 의거 국회의결 사항임
 - ('94) 58,000 → ('95) 88,000억원, 그중 농산물 수출보험체결한도 1,000억원

(2)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 도입 추진현황

가) 그간의 추진경위

- '93. 2 : 농수산물 수출보험 신설요청(농림수산물 → 상공자원부)
- '94. 8 :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근거 마련
- '94.10 : '95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8조8,000억원중 농수산물 수출보험으로 1,000억원 반영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약관 초안작성 및 사업화 추진중이며 '95. 4월부터 시행계획임

나) 농수산물 수출보험약관 초안 개요

○ 보험대상위험

- 가격상승위험 : 수출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조달가격이 수출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위험
- 대금회수불능위험 : 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위험

○ 가격상승 위험담보 보험

- 대상품목 : 사과, 배, 버섯, 굴, 김, 돼지고기, 화훼, 닭고기, 배추(수출용김치)등 10개 품목(점진적으로 확대)
- 보험기간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이내 범위
- 보험요율 : 일반수출보다 낮은 요율(일반수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0.5% 수준)
- 손실액산정 : 국내조달가격 - 수출계약금액의 95% 상당액
- 보상책임액 : 손실액보상(단, 수출금액 환산액의 45% 한도이내)

(3)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절차

가) 상담단계

- 거래추진전에 대하여 충분한 시일을 두고 보험인수 상담

- 인수가능여부 타진 및 예상보험료 확인
- 상담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
 - 물품공급계약 수출계약의 개요
 - 수출물품의 국내시장가격
 - 담보위험의 범위

나) 보험청약

- 수출불능위험 및 대금회수불능 위험만 담보시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계약 절차 준용
- 가격상승위험 담보시
 - 물품공급계약과 수출계약의 체결시점이 3개월이내
 - 물품공급계약과 수출계약의 선후관계 무관
 - 최종계약(공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체결후 10영업일내 보험청약

다) 보증금 청구 및 지급절차

- 시점별 도해

손실발생	사고발생통지	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
1월이내		1월이후	2월이내

(가격상승위험은 15일 이내)

- 보험금 지급시한
 - 최단 : 1개월(즉시 통지, 1월후 청구, 즉시 지급)
 - 최장 : 4개월(가격상승위험은 3개월 15일)
- 위험발생통지
 - 위험발생통지는 선적기일 또는 결제기한과 관계없이 사유발생시 이행

4.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第2項 - 농림수산업 생산자 지원

□ 特別法 規定 □

第11條(國內支援 政策의 施行)

②政府는 協定 發效후 조속한 시일내에 農林水産業의 生産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協定이 허용하는 다음 各號의 支援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1. 生産統制를 目的으로 한 直接支拂
2. 零細農등을 위한 보조
3. 土壤등 環境保全을 위한 有機農·耕種農에 대한 보조
4. 農林水産業 災害에 대한 지원
5. 生産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가. 生産統制를 目的으로 한 直接支拂

(1) WTO 농업협정 규정

- WTO 농업협정은 감산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보조 정책을 허용하고 있음.

가) 생산제한 계획에 따른 직접지불(농업협정 제6조5항)

- 성격
 - 원칙적으로 감축대상보조이나 특정연도에 생산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농가에 대하여 감산보상 또는 차액보상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이를 감축대상보조액(AMS)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면제함
 - 생산을 제한하는 연도에 한하여 제한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불에 한정됨.
- 감축이 면제될 수 있는 직접지불 조건
 -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경우 또는
 -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경우
 - 가축은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감축면제 방법

- 감축기준이 되는 AMS('86~'88실적)에는 산입하되 이행기간중 매년 보조금 산출에는 제외함.

○ 외국의 운용사례

- 미국의 Deficiency Payment, EU의 Compensatory Payment, Set-Aside Premium등이 이에 해당됨.(미국의 Deficiency Payment는 '96년 폐지)

나) 허용대상보조로서의 휴경보상(농업협정 부속서 2의 10)

○ 성 격

- 상업적 농업생산을 중단하는 농가에 대한 지불로서 경작면적의 완전휴경, 가축의 도살 등 처분을 조건으로 함.

○ 허용요건

- 농지는 최소 3년 이상 상업적 생산으로부터 휴경, 가축은 도살 또는 확정적 영구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불이어야 함.
- 보조금 지불을 조건으로 다른 상업적 농산물 생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 휴경하지 아니한 농작물의 생산형태, 생산량, 잔류농지 그밖의 자원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외 가격과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함.

○ 감축면제방법

- 허용보조로 분류되어 감축을 면제함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농업협정 제6조 5항)>

5. (a) Direct payment under production-limiting programmes shall not be subject to the commitment to reduce domestic support if ;
- (i)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rea and yields ; or
 - (ii) such payment are made on 85 per cent or less of the base level of production ; or
 - (iii)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number of head.
- (b) The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 for direct payments meeting the above criteria shall be reflected by the exclusion of the value of those direct payments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허용보조 : 자원 폐기계획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부속서 2의 10)>

10.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
-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clearly defined criteria in programmes designed to remove land or other resources, including livestock, from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 (b) Payments shall be conditional upon the retirement of land from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in the case of livestock on its slaughter or definitive permanent disposal.
 - (c) Payments shall not require or specify any alternative use for such land or other resources which involves the production or marketable agricultural products.
 - (d) Payments shall not be related to either the type or quantity of production or to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production undertaken using the land or other resources remaining in production.

(2) 우리나라의 현행 생산제한정책 관련법률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94. 12. 31 개정, 2000. 12. 28 전문개정)</p>	<p>第5條(農業觀測)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畜産物 및 林産物의 需給 安定을 위하여 價格의 騰락폭이 큰 主要 農産物·畜産物 및 林産 物에 대하여 매년 氣象情報·生産面積·作況·在庫物量·消費動 向·海外市場情報 등을 調査하여 이를 分析한 農業觀測을 실시하 고 그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은 효율적인 農業觀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品目을 지정하여 地域農業協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 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林業協同組合 기타 農林部令이 정 하는 者로 하여금 農業觀測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業務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業觀測委員會를 두며,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를 農業觀測專擔機關으로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農業觀 測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 로 정한다.</p> <p>第6條(契約生産)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主要 農水産 物의 원활한 需給과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地域農業協 同組合,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林業協同 組合, 水産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需要者와 生産者간에 契約生 産 또는 契約出荷를 하도록 獎勵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 産契約 또는 出荷契約을 체결하는 生産者團體 또는 農水産物需要 者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契 約金의 貸出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第7條(自助金의 積立支援)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生 産者團體가 農水産物의 販路擴大,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도모</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하기 위하여 自助金を 造成·運營하는 경우에는 그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서 補助金を 지급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助金の 造成方法, 보조대상이 되는 農水産物과 補助金の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한다.</p> <p>第8條(價格豫示) ①農林部長官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主要 農産物の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の 播種期이전에 生産者の 보호를 위한 下限價格(이하 “豫示價格”이라 한다)을 例示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の 農業觀測結果, 豫想經營費, 地域別 豫想生産量 및 豫想需給狀況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p> <p>③農林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示價格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價格을 豫示한 경우에는 豫示價格을 支持하기 위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觀測의 지속적 실시,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生産 또는 契約出荷의 獎勵,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流通契約 및 流通調節命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備蓄事業 등을 連繫하여 적절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p> <p>第9條(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 ①農林部長官은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水産物の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로부터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이를 收買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買한 農水産物은 이를 販賣 또는 輸出하거나 社會福祉團體에 寄贈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③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처분에 관한 業務를 農業協同組合中央會·林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農水産物流通公社法에 의한 農水産物流通公社(이하 “農水産物流通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處分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流通契約 및 流通調節命令) ①主要 農水産物の 生産者, 産地 流通人, 貯藏業者, 都·小賣業者 및 消費者 등(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의 代表는 당해 農水産物の 自律的인 需給調節과 品質向上을 위하여 生産調節 또는 出荷調節을 위한 協約(이하 “流通協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腐敗·變質되기 쉬운 農水産物로서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 현저한 需給不安定을 解消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地域의 당해 農水産物の 生産者등에 대한 生産調整 또는 出荷調節을 하도록 하는 流通調節命令(이하 “流通命令”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p> <p>③流通命令에는 流通命令을 발하는 이유, 對象品目, 對象者, 流通調節方法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등 또는 生産者團體가 流通命令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要請書를 작성하여 利害關係人·流通專門家の 意見收斂節次를 거치고 당해 農水産物の 生産者등의 代表나 당해 生産者團體의 在籍會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p> <p>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命令을 요청할 수 있는 生産者등의 組織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第11條(流通命令의 執行)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命令이 이행될 수 있도록 流通命令의 내용에 관한 弘報, 流通命令 違反者에 대한 制裁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당해 農水産物의 生産者등의 組織 또는 生産者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第12條(流通命令 履行者에 대한 지원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流通契約 또는 流通命令을 이행한 生産者등이 당해 流通契約이나 流通命令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損失에 대하여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이를 補填하게 할 수 있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流通命令의 執行業務의 일부를 수행하는 生産者등의 組織이나 生産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농안법 시행규칙 (2000 시행)</p>	<p>제4조(농업관측을 하는 자)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유통공사 2.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p>제5조(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농림부 소속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4인,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p> <p>3. 농업인, 농림관련단체 및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4. 농업관련대학의 교수 기타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다.</p> <p>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농업관측의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p> <p>2. 품목별 생산·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중·장기동향 및 전망 등의 발표에 관한 사항</p> <p>3.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p> <p>②관측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p>

(3) 직접지불제도 도입선행 검토 과제

- 감산정책도입 필요성 여부(미국·EU등은 과잉생산해소를 통한 정부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도입)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농산물공급의 안정성 확보방안
- WTO협정 이행으로인한 수급구조와 농가소득의 변화추세
- 재정지출항목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 소농구조하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 생산농가의 이해득실 등

(4) 시행중인 직접지불제

-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나. 零細農등을 위한 보조

(1) WTO 농업협정 규정

-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농업협정 부속서 2)는 지원조건을 영농 규모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개도국의 경우 다음의 감축대상 보조에 대하여 감축의무를 면제함.(농업협정 제6조2항)
 - ① 일반적 투자보조
 - ② 저소득,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
 - 저소득, 자원빈약 생산자에 대한 정의는 없음
 - ③ 마약작물 작목전환 지원

<참고>

<개도국 우대 보조에 관한 농업협정(제6조제2항)>

2. In accordance with the Mid-Term Review Agreement that government measures of assistance, whether direct or indirect to encourage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ar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grammes of developing countries, investment subsidies which are generally available to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and agricultural input subsidies generally available to low-income or resource-poor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be exempt from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that would otherwise be applicable to such measures, as shall domestic support to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to encourage diversification from growing illicit narcotic crops. Domestic support meeting the criteria of this paragraph shall not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2) 시책추진현황

-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보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자재보조는 영세농, 전업농 등의 구분없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근거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 구조적으로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농민에 대하여는 다음의 농업협정상 허용되는 소득지원시책을 추진(예시)
 - 부채경감 이차보전(농어가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동법에 의해 0.7ha미만 저소득 농가에 대하여는 이자를 감면)
 - '83~'84 소입식자금 이차보전
 - 학자금 지원
 - 오지 낙도 교통지원
 - 영세 고령농에 대한 생활비지급(생활보호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 농어민 연금지원
- 의료보험지원 등

다. 土壤 등 環境保畧을 위한 有機農 · 耕種農에 대한 보조

(1) WTO 농업협정 규정

○ 수혜자격

-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 또는 보존계획에 의하여
-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 등에 관한 정부계획 이행에 따르는 농민에 한함.

○ 지원 한도

- 정부계획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 이내의 보전에 한함.

<참고>

〈환경보전지원에 관한 농업협정(부속서 2의12)〉

12. Payment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

-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as part of a clearly-defined government environmental or conservation programme and be dependent on the fulfilment of specific conditions under the government programme, including conditions related to production methods or inputs.
- (b) The amount of payment shall be limited to the extra costs or loss of income involved in complying with the government programme.

○ 의 의

-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환경보전지원이란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에 대한 보상적 지출이 아니라
- 정부가 환경보전계획, 또는 토양보전계획(예 : 휴경 등)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생산방법이나 생산요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농민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임.

(2) 농업부문 환경보전지원에 관한 법령 현황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農地法('96. 1. 1부터 施行)</p>	<p>第20條(土壤의 개량·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이 環境保全的인 農業經營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施行, 土壤의 개량·보전에 관한 試驗·研究·調査등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國家는 第1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土壤을 개량·보전하는 사업등을 施行하는 地方自治團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農業生産者團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소용되는 資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汚水·糞尿 및 畜 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97. 3. 7, '99. 2. 8 개정) (環境部 所管)</p>	<p>第24條의2(畜産廢水排出施設에 대한 設置許可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を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p> <p>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健康·財産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외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第25條(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등) ①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한 者와</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畜產業者”라 한다)가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함에 있어서는 당해 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單獨 또는 共同으로 畜産廢水淨化施設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정화시설의 設置외의 방법으로 畜産廢水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定한다.</p> <p>③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p> <p>第30條(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4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외의 小規模 畜産廢水排出 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定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畜産廢水公共處理 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定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된 畜産廢水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下水道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대상 畜産廢水排出施設의 범위 및 處理對象地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당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처리대사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운영중인 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畜産廢水を 貯藏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 2. 畜糞을 分離排出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 <p>⑥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4조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を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 2. 畜産廢水排出施設이 密集된 地域의 畜産廢水を 管渠를 이용하여 당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로 流入시키는 경우 <p>第32條(畜産廢水の 처리 및 費用負擔 등) ①市場·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を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 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の 收集·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p> <p>③市長·郡守·區廳長은 畜産廢水を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되는 畜産廢水を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 施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p> <p>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는 費用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유지·관리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34條(家畜飼育의 제한 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 또는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地域을 지정하여 그 地域안에서는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②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地域住民의 生活 環境保全 또는 上水源의 水質保全에 重大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畜舍의 移轉을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이상의 猶豫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財政的 지원·敷地斡旋 등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등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는 家畜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飼育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47條(國庫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p>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法律 施行令 및 施行規則</p>	<p><생 략></p>
<p>○ 환경농업육성법 ('97. 12. 31 제정)</p>	<p>第19條(環境農産物 生産·流通支援) ①農林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環境農産物 生産者, 生産者團體 및 流通業者에 대하여 施設 設置資金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環境農産物 生産·流通에 대한 지원은 環境農業에 대한 寄與度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99. 3. 31 개정)</p>	<p>제1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제14조(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은 환경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다.</p> <p>제15조(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할 것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성분검사 및 잔류농약검사의 결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될 것

(3) 환경보전지원제도 검토과제

-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지원이 WTO 농업협정에 규정된 허용보조로 지원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게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함.
 - 농업생산에 관한 투입재 사용 등을 규제한 환경보전정책의 도입.
 - 지속농업의 실현을 위한 토양보전 계획의 입안(예 : 휴경계획 등)
- 보조금 지급은 농민이 그러한 규제정책의 이행에 비용부담이 따르거나 생산감소로 소득손실이 발생되어 이를 보전하는 것이어야 함.
 - * 현재 시행중인 축산폐수배출시설비 지원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이에 해당됨.
- 따라서 단순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자재보조 등은 협정규정에 따라 감축대상보조인 투입재보조로 분류될 수 있음.
 - 다만, 그러한 자재보조가 감축 보조금 산출 방법의 하나인 품목불특정보조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전체 품목불특정 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축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한도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함.

라. 農林水産業 災害에 대한 지원

(1) WTO 농업협정 규정

○ 성 격

-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직접지불 또는 농작물 보험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함.

- 재해범위 : 자연재해, 질병발발, 병해충, 핵사고, 영토내에서의 전쟁 등

○ 수혜자격 : 정부당국이 재해임을 공식인정하고 재해로 인하여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년기간중 최고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생산의 30%를 초과하는 생산손실을 입은 자

○ 보조대상 재해손실 : 재해에 기인한 소득, 가축, 토지, 그밖의 생산요소 손실

○ 지원수준 : 손실복구에 필요한 총비용 이내, 재해기간동안 이루어진 지불은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내

<참고>

<재해지원에 관한 농업협정(부속서 2의 8) >

8. Payments(made either directly or by way of government financial participation in crop insurance schemes) for relief from natural disasters
-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arise only following a formal recogni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that a natural or like disaster(including disease outbreaks, pest infestation, nuclear accidents, and war o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concerned)has occurred or is occurring : and shall be determined by a production loss which exceeds 30 per cent of the average of production in the preceding three-year period or a three-year average based on the preceding five-year period, excluding the highest and the lowest entry.
- (b) Payments made following a disaster shall be applied only in respect of losses of income, livestock(including payments in connection with the veterinary treatment of animals), land or other production factors due to the natural disaster in question.
- (c) Payments shall compensate for not more than the total cost of replacing such losses and shall not require or specify the type or quantity of future production.

- (d) Payments made during a disaster shall not exceed the level required to prevent or alleviate further loss as defined in criterion (b) above.
- (e) Where a producer receives in the same year payments under this paragraph and under paragraph 7(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 net programmes), the total of such payments shall be less than 100 per cent of the producer's total loss.

(2) 우리나라의 農林水産業 災害지원 관련 법령

法 令 名	關 係 條 文
自然災害對策法 ('95. 12. 6 전문 개정) (行政自治部 所管)	<p>第1條(目的) 이 법은 自然災害로부터 國土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보호하기 위한 防災組織 및 防災計劃등 災害豫防·災害應急對策·災害復舊 기타 災害對策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災害”라 함은 颱風·洪水·豪雨·暴風·海溢·暴雪·가뭄 또는 地震(地震海溢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準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被害를 말한다. 2. “防災責任者”라 함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市長·郡守 및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政機關의 長과 團體 등의 長(이하 “指定機關의 長”이라 한다) 기타 法令에 의하여 災害豫防·災害應急對策·災害復舊에 관한 책임이 있는 機關·團體 등을 말한다. 3. “防災施設”이라 함은 災害防止의 機能을 修行하고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p>第36條(災害應急對策) ① 防災責任者는 關係法令 또는 防災計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災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災害가 發生한 때에는 災害 발생을 豫防하거나 災害를 輕減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災害應急對策을 實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警報의 發令 또는 傳達이나 避難의 警告 또는 指示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2. 水防·地震防災·鎮火 기타의 應急措置와 救護</p> <p>3. 被害施設의 應急復舊</p> <p>4. 防疫과 防犯 기타 疾病의 維持</p> <p>5. 緊急 輸送 및 構造手段의 確保</p> <p>6. 給水手段의 確保</p> <p>7. 기타 災害의 發生을 豫防하거나 災害를 輕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p> <p>②防災責任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害應急對策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防災責任者나 關係機關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防災責任者나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第62條(國庫補助등) ①國家는 災害豫防, 災害應急對策 또는 災害復舊事業의 圓滑한 實施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金を 포함한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負擔하거나 이를 地方自治團體 기타 防災責任者에게 補助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害復舊事業의 財源은 大統領令으로 災害救護 및 災害復舊費用 負擔基準을 정하여 國庫의 負擔金 또는 補助金과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義捐金 등으로 充당하되, 地方自治團體의 負擔金중 市·道 및 市·郡·區가 부담하는 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p> <p>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害를 입은 罹災民의 生計安定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支援을 할 수 있다.</p> <p>1. 罹災民의 救護</p> <p>2.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p> <p>3. 營農·魚資金의 償還期限 延期 및 그 利子の 減免</p> <p>4. 政府糧穀의 無償支給</p> <p>5. 기타 中央災害對策本部會議에서 決定한 事項</p> <p>④國家는 災害對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被害狀況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軍裝備 및 兵力을 支援하고 災害와 관련된 國庫支援事業을 우선 支援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農漁業災害對策法 ('90. 8. 1 제정, '93. 6. 11 개정) (農林部 所管)	<p>第1條(目的) 이 法은 農業 및 漁業生産에 대한 災害의 豫防과 그 事後對策을 强구함으로써 農業 및 漁業의 生産力을 增進하고 農業 및 漁業의 經營의 安定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災害”라 함은 農業災害와 漁業災害를 말한다. 2. “農業災害”라 함은 旱害·水害·風害·冷害·우박·서리·潮害·雪害·凍害·病蟲害 기타 農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農業用 施設·農作地·農作物 및 家畜의 被害를 말한다. 3. “漁業災害”라 함은 異常潮流·赤潮現象, 태풍·해일 기타 漁業災害對策審議委員會가 인정하는 自然現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水産養殖物 및 漁業施設物의 被害를 말한다. <p>第4條(補助 및 지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害對策에 소요되는 費用을 전부 또는 최대한 補助하고 災害를 입은 農家 및 漁家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自然災害對策法 기타의 法令에 의하여 災害의 豫防·被害의 輕減·災害의 復舊 및 지원의 措置를 받은 農家 및 漁家は 이 法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農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旱害對策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揚水를 한 때에는 그 揚水에 소요된 油類代金 및 電氣料 나. 揚水機 및 揚水用 發動機의 購入費 다. 揚水用 펌프 및 管井의 施設費 2. 農作物의 病害蟲을 防除하는 경우 : 農藥代金 3. 農作物을 代播하는 경우 : 種苗代金 및 肥料代金 4. 流失 또는 代播된 農作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 5. 流失 또는 破損된 農業用 施設을 復舊하는 경우 : 施設費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6. 流失되었거나 죽은 家畜에 갈음하여 入殖하는 경우 : 어린 家畜의 入殖費</p> <p>7. 流失 또는 埋沒된 草地를 復舊하는 경우 : 復舊費</p> <p>8. 流失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飼育費</p> <p>9. 災害를 입은 農家の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p> <p>가. 罹災民의 救護</p> <p>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p> <p>다. 營農資金의 償還期限延長 및 그 利子の 減免</p> <p>라. 政府糧穀의 支給등</p> <p>10. 기타 지원사항</p> <p>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災害를 입은 漁家에 대하여 행하는 補助 및 지원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p> <p>1. 異常潮流 또는 赤潮現象으로 인한 水産養殖物의 被害가 있는 경우 :</p> <p>가. 種苗代金 또는 稚魚代金</p> <p>나. 죽은 養殖物의 撤去費</p> <p>2. 災害를 입은 漁家の 生計安定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p> <p>가. 罹災民의 救護</p> <p>나. 中學生 및 高等學生의 學資金 免除</p> <p>다. 營農資金의 償還期限延長 및 그 利子の 減免</p> <p>라. 政府糧穀의 支給등</p> <p>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의 基準과 方法에 관하여는 自然災害對策法을 準用하되, 同法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p> <p>⑤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家 및 漁家에 대한 補助 및 지원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第9條(補助 및 지원의 제한)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家 및 漁家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災害의 豫防 및 事後復舊의 管理를 故意로 게을리하여 그 被害를 擴大시킨 경우 2. 災害에 대한 被害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p>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90. 8. 1 전문개정, '93. 8. 28 개정)</p>	<p>제3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면제는 교육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실시한다.</p> <p>제4조(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용자알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용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p>
<p>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90. 12. 27 제정, '93. 9. 14 개정)</p>	<p>제2조(국가의 보조·지원대상 농업재해)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93.9.14> 2. 한해·수해·풍해·냉해·조해·동해·병충해 기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 : 50헥타르이상 3. 서리·우박 또는 설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면적 : 30헥타르이상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4. 농업용시설·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p> <p>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군에 연접한 시·군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동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연접한 시·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조의2(한해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지원)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뭄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한해대책비”라 한다)이 시·군별로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한해대책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한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조(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①국가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받은 어장 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의 규모가 시·군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이상조류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p> <p>2.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3억원이상</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3. 태풍·해일 기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및 어업시설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액 : 각 3억원이상</p> <p>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 : 각 50퍼센트</p> <p>가. 양수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소용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p> <p>나. 양수기 및 양수용발동기의 구입비</p> <p>다. 양수기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p> <p>라. 양수용송수관구입비</p> <p>2. 법 제4조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철거비 : 30퍼센트</p>

(3) 특별법 시행과제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마. 生産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1) WTO 농업협정 규정(농업협정 부속서 2의6)

○ 성 격

-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중 농업생산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의미함.

○ Decoupled Income Support의 허용요건

- 1) 공공재정에 의한 지원이어야 하고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함.
- 2)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이어야 함.
 - 수혜자격은 명백히 규정된 기준기간동안의 소득, 생산자 또는 경지소유자 여부, 요소 사용 또는 생산실적 등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여야 함.
- 3) 당해연도 직접지불은 일체의 농업생산(당해연도 이후의 생산량, 생산형태, 국내외 가격, 생산요소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4) 농업생산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참고>

< 농업협정의 Decoupled Income Support 허용요건(부속서 2의6) >

6. Decoupled income support

- (a) Eligibility for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by clearly-defined criteria such as income, status as a producer or landowner, factor use or production level in a defined and fixed base period.
- (b)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type or volume of production (including livestock units) undertaken by the producer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 (c)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prices, domestic or international, applying to any production undertaken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 (d) The amount of such payments in any given year shall not be related to, or based on, the factors of production employed in any year after the base period.
- (e) No production shall be required in order to receive such payments.

(2) 우리나라의 농어민에 대한 복지정책 관련 지원법률 현황(예)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89. 12. 30 제정)</p>	<p>第1條(목적) 이 법은 農漁家의 金融負擔을 완화함으로써 農漁業의 經營費를 節減하고 農漁家의 負債償還 부담을 輕減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農漁民”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水産業協同組合法 및 畜産業協同組合法에서 規定하는 農民, 漁民, 養畜家를 말한다.</p> <p>第3條(中長期資金의 利子減免 및 償還延期) ①이 法 施行日 현재 耕地面積 2헥타르 미만 農家와 이에 準하는 漁家 및 養畜家의 農漁家負擔중 償還期間이 2年이상인 中長期資金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동안 据置후 5年동안 均等分割하여 償還한다. 다만, 이미 融資받은 資金의 償還期間이 5年 据置후 5年 均等償還보다 길거나 有利한 때에는 그 融資條件에 따른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資金의 金利는 耕地面積 0.7헥타르 미만 또는 이에 準하는 農漁家·養畜家에 대하여는 無利子로 하고, 耕地面積 0.7헥타르이상 2헥타르 미만 또는 이에 準하는 農漁家·養畜家에 대하여는 年利 3퍼센트로 한다.</p> <p>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中長期資金의 범위는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다만, 1983年度 및 1984年度중에 農漁民에게 소入植資金으로 融資된 資金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支援되는 資金의 限度는 家口當 400萬원으로 하되 1988年 12月 31日 현재의 家口當 貸出殘額을 초과할 수 없다.</p> <p>第4條(相互金融借入金의 利子減免 및 償還延期) ①이 法 施行日 현재 耕地面積 2헥타르미만 農家와 이에 準하는 漁家 및 養畜家의 負債중 相互金融資金 借入金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동안 据置후 7年동안 均等分割하여 償還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金融資金 金利는 耕地面積 0.7헥타르 미만 또는 이에 準하는 農漁家·養畜家에 대하여 無利子로 하고, 耕地 面積 0.7헥타르이상 2헥타르미만 또는 이에 準하는 農漁家·養畜家에 대하여는 年利 5퍼센트로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특별지원되는 資金의 限度는 家口當 200萬원으로 하되 1988年 12月 31日 현재의 家口當 貸出殘額을 초과할 수 없다.</p> <p>第5條(對象 農漁家·養畜家の 審査등) ①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특별지원하는 農漁家·養畜家の 범위는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支援對象 農漁家·養畜家를 審査하기 위하여 邑·面·洞에 “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p> <p>③第2項의 審査委員會의 設置와 운영에 관하여는 農林部長官이 정한다.</p> <p>第6條(利差補填) ①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金利引下로 인하여 발생되는 金融機關등의 損失은 政府에서 이를 補填한다.</p> <p>②第1項의 利差補填金은 每會計年度 一般會計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p> <p>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差額이 精算되기 이전이라도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概算額을 金融機關에 支給할 수 있다.</p>
<p>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94. 8. 11 제정, '96. 12. 12 개정)</p>	<p>第1條(目的) 이 法은 農林水産業의 競爭力強化와 農漁村生活環境改善 및 農漁民의 厚生福祉를 위하여 확보된 農漁村特別稅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3條(會計의 歲入 및 歲出) ①이 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漁村特別稅法에 의한 農漁村特別稅額 2.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收入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상 剩餘金</p> <p>4. 財政融資特別會計法에 의한 財政融資特別會計로부터의 預受金</p> <p>5. 國債法에 의한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p> <p>6. 기타 收入金</p> <p>②이 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p> <p>1. 農林水産業競爭力強化, 農漁村生活環境改善 및 農漁民厚生福祉 增進을 위한 사업으로서 別表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農林部 · 農村振興廳 · 山林廳 및 海洋水産部所管事業에 대한 投資 · 보조 · 融資 및 出捐</p> <p>2. 農林水産業競爭力強化, 農漁村生活環境改善 및 農漁民厚生福祉 增進을 위한 사업으로서 別表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農林部 · 農村振興廳 · 山林廳 및 海洋水産部所管事業에 대한 投資 · 보조 · 融資 및 出捐을 위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의 農漁村特別 稅轉入金事業計定으로의 轉出金</p> <p>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에 따른 地方自治團體 부담액의 지원을 위한 交付金</p> <p>4. 第1號의사업중 地方讓與金法에 의한 地方讓與金對象事業에 대한 地方讓與金管理特別會計로의 轉出金</p> <p>5.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預受金の 元利金償還</p> <p>6. 이 會計의 運用 · 관리에 소요되는 經費</p> <p>③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預受金은 同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당해연도의 歲入이 1兆 5千億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會計의 歲入으로 할 수 있으며, 그 預受金の 元利金은 당해연도의 歲入이 1兆 5千億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償還하여야 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별표> 農漁村特別稅 對象事業(第3條2項第1號 및 第2號 관련)</p> <p>3. 農漁民厚生福祉增進</p> <p>가. 農漁民年金制 운영지원</p> <p>나. 農漁村醫療서비스 개선</p> <p>다. 大學生 學資金 融資</p> <p>라. 奧地 및 落島 交通 지원</p> <p>마. 農漁民就業訓練</p> <p>바. 共同圖書館 建立·운영</p> <p>사.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p>
<p>생활보호법 ('97. 8. 22, '99. 2. 8 개정) (보건복지부 소관)</p> <p>* 2000년 10월 1일 부로 폐지-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대체</p>	<p>第1條(目的) 이 法은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者에 게 필요한 보호를 行하여 이들의 最低生活을보장하고 自活을 助成 함으로써 社會福祉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3條(保護對象者의 범위) ①이 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扶養義務者 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能力이 없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最低生計費를 勘案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所得과 財産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定하는 保護對象者 選定基準에 해당 하는 者를 말한다.</p> <p>1. 65歲이상의 老衰者</p> <p>2. 18歲미만의 兒童</p> <p>3. 妊産婦</p> <p>4. 疾病, 事故 등의 結果로 인하여 勤勞能力을 상실하였거나 障礙 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者</p> <p>5. 第1號 내지 第4號의 者와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서 이들의 扶 養, 養育, 看病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生活이 어려 운 者</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6. 기타 生活이 어려운 者로서 保護機關이 이 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로 한 者</p> <p>②第1項이 정하는 保護對象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生活이 어려운 者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이 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者는 保護對象者로 본다.</p> <p>③第1項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能力이 없거나 扶養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條(보호의 基準등) ①이 法에 의한 보호의 水準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p> <p>②이 法에 의한 보호의 基準은 保健福祉部長官이 保護對象者의 年齡·世帶構成·居住地域 기타 生活與件 등을 考慮하여 보호의 種類로 정한다.</p> <p>③保護機關은 이 法에 의한 보호를 世帶를 單位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個人을 單位로 하여 행할 수 있다.</p> <p>第7條(보호의 種類) ①이 法에 의한 보호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生計保護 2. 醫療保護 3. 自活保護 4. 教育保護 5. 解産保護 6. 葬祭保護 <p>②이 法에 의한 보호는 保護對象者의 필요에 따라 第1項 各號에 정한 하나의 保護만을 行하거나 2이상의 保護를 함께 行하는 것으로 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 9. 7 제정,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생활보 호법은 폐지)</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 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p> <p>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 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 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 사를 5년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p> <p>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국민연금법 (’95. 1. 5, ’98. 12. 31 개정) (보건복지부소관)</p>	<p>第10條(地域加入者)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加入者가 아닌 者로서 18歲이상 60歲미만인 者는 당연히 地域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p> <p>1.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別도의 所得이 없는 者</p> <p>가. 第6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國民年金加入對象除外者의 配偶者</p> <p>나. 事業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의 配偶者</p> <p>다. 別定郵遞局職員의 配偶者</p> <p>라. 退職年金등 受給權者의 配偶者</p> <p>2. 退職年金등 受給權者</p> <p>3. 18歲이상 23歲미만인 者로서 學生이거나 軍服務 등으로 所得이 없는 者</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第5條(農漁民에 대한 年金保險料 보조) 農漁民으로서 第10條 또는 附則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域加入者로 된 者와 地域加入者에서 임의繼續加入者로 된 者에 대하여는 第75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4年 12月 31日까지 本人이 부담할 年金保險料중 標準所得月額의 最低等級 年金保險料의 3分の 1에 해당하는 금액을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에서 均等支援한다.</p>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97. 2. 25 제정, '99. 3. 31 개정)</p>	<p>제3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이를 대행한다.</p>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97. 2. 25 제정, '99. 4. 29 개정)</p>	<p>제2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 ①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연간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의 대상인원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p>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등에 대하여 농업경영규모, 재배작목 기타 농업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방안을 기초로 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3) 지원시책 검토과제

-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소득보조(Decoupled Income Support)란 UR협상초기 과정에서 농업보조금의 WTO 규율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농업생산과 연계된(coupled) 보조는 철폐 또는 규율대상으로 분류하고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Decoupled)지원은 무역왜곡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보조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최종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임.
- 따라서 이 보조는 농업에 대한 산업지원 제도가 아니라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으로서 농업생산, 즉 경작면적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여타 농산물의 국내 외가격 등과 연계하여 지원액이 결정되어서는 아니됨.(대상자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설정할 수 있음)
- 즉 이 보조는 전체국민 소득계층간의 소득수준의 형평성유지 내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대급부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원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러한 보조의 도입은 국가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도입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현재 시행중인 경영이양직접지불제가 이에 해당됨. 또한 2001년 도입을 전제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이에 해당됨.

5. 第12條(生産者團體의 農林水産物 需給調節事業에 대한 지원)

□ 特別法規定 □

第12條(生産者團體의 農林水産物 需給調節事業에 대한 지원) 政府는 農林水産物 需給調節 사업을 하는 生産者團體에게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買·備蓄·加工등의 施設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구매·비축·가공 등의 시설지원 관련 법령현황(예)

法 令 名	關 係 條 文
<p>農業·農村基本法 (’99. 2. 5 제정)</p>	<p>第30條(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의 安定) ①政府는 農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p> <p>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 등 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第31條(農産物의 流通改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流通의 生活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産物의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流通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포장·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第32條(農産物의 品質管理 등) ①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 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②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第33條(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功施設에 대한 지원 등 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p>
<p>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94. 8. 21 제정)</p>	<p>第3條(會計의 歲入 및 歲出) ①이 會計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漁村特別稅法에 의한 農漁村特別稅額 2.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금의 元利金 收入

法 令 名	關 係 條 文				
'96. 12. 12 개정)	<p>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상 剩餘金</p> <p>4. 기타 收入金</p> <p>②이 會計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p> <p>1. 農林水産業競爭力強化, 農漁村生活環境改善 및 農漁民厚生福祉 增進을 위한 사업으로서 別表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農林部· 農村振興廳· 山林廳 및 海洋水産部所管事業외의 사업에 대한 投資· 融資 및 出捐</p> <p>2. 農林水産業競爭力強化, 農漁村生活環境改善 및 農漁民厚生福祉 增進을 위한 사업으로서 別表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農林部· 農村振興廳· 山林廳 및 海洋水産部所管事業외의 사업에 대한 投資· 融資 및 出捐을 위한 農漁村救助改善特別會計의 農漁村特別 稅轉入金事業計定으로의 轉出金</p> <p>[별표]</p> <p>農漁村特別稅 對象事業(第3條第2項第1號 및 第2號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466 1146 1364 1982"> <thead> <tr> <th data-bbox="475 1155 710 1205">分 野 別</th> <th data-bbox="716 1155 1358 1205">細 部 事 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1214 710 1973">1. 農林水産業 競爭力強化</td> <td data-bbox="716 1214 1358 1973">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 專門教育을 하는 各種學校 및 自營農水産高 等學校의 지원 다. 물류센터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 마. 中·小農家の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 加工 지원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農林 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 出捐 사. 漁港建設 아. 養殖漁場 및 農村綜合開發 자. 育林 및 林道建設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td> </tr> </tbody> </table>	分 野 別	細 部 事 業	1. 農林水産業 競爭力強化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 專門教育을 하는 各種學校 및 自營農水産高 等學校의 지원 다. 물류센터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 마. 中·小農家の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 加工 지원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農林 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 出捐 사. 漁港建設 아. 養殖漁場 및 農村綜合開發 자. 育林 및 林道建設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分 野 別	細 部 事 業				
1. 農林水産業 競爭力強化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 專門教育을 하는 各種學校 및 自營農水産高 等學校의 지원 다. 물류센터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 마. 中·小農家の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 加工 지원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農林 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 出捐 사. 漁港建設 아. 養殖漁場 및 農村綜合開發 자. 育林 및 林道建設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法 令 名	關 係 條 文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에 관한 법률 (2000. 1. 28 전문 개정)	第5條(融資 및 보조) 農林部長官은 山地에서 加工品の 生産을 業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者(이하 “加工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加工品の 生産 및 開發, 加工品 專門販賣店의 設置·운영, 加工品の 輸出促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96. 8. 8 개정)	第26條(融資 및 보조) 農林部長官은 糧穀의 需給調節, 食生活의 개선, 糧穀의 加工·보관·流通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94. 12. 23 개정)	제31조(융자 및 보조대상사업)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수급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중 원료양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결손이 초래되는 사업 2. 정부가 국민식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업 3. 양곡시장의 개선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양곡관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축산법 (’99. 1. 29 전문 개정)	第39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사용한다. 1. 畜産業의 構造改善 및 生産性 향상 2.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3. 家畜과 畜産物의 流通改善 4. 飼料의 需給 및 飼料자원의 開發 5. 家畜衛生 및 防疫 6. 畜産糞尿의 資源化 處理 및 이용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事業에 대한 事業費 및 經費의 지원 8. 기타 畜産發展에 필요한 事業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事業

法 令 名	關 係 條 文
	②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신청방법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생 략>

나. 시책추진 현황

- 농어촌대책의 경쟁력 제고대책 각 부문에 걸쳐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반영 추진
 - 농산물유통사업, 축산종합대책 등

6. 第13條(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의 실시)

□ 特別法 規定 □

第13條(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의 실시) 政府는 協定 이행과 관련하여 農林水産業의 構造調整事業을 施行하여야 하며 協定 發效후 年1回 施行 내용을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사업 관련법령

(1) 구조개선사업의 정의(관계법률의 장에서 규정한 사항)

法 令 名	關 係 條 文
농업·농촌기본법 (’99. 2. 5 제정)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法 令 名	關 係 條 文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제10조(통일대비 농업정책)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18조(농업관련단체의 육성) 제22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제23조(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제24조(농업기계화등의 촉진)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제26조(벤처농업등의 육성) 제27조(지적재산권등의 보호)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 관련법령

法 令 名	關 係 條 文
농업·농촌기본법 ('99. 2. 5 제정)	第45條(農政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사업 시책수립 내용

(1)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수립

- '93.12.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농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어민을 비롯한 각계대표가 참여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 확정('94.6.14)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화 촉진, 생활여건개선 및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수립
- 농어업 경쟁력강화 10대 시책 등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건의한 129개 과제 시책화
- '94.12.14 농업수산업 통합실시 요령 제정(농림수산부 훈련 제801호) 공포. 시행

(2) 농어촌 투융자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 농어촌발전대책을 재원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투융자기본계획과 농특세등 재원 확보대책 수립
- 당초 2001년까지 투융자기로 한 『42조원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집행하여 농어촌구조개선에 집중 투자
- '95~2004년간 15兆원의 農特稅를 신설, 농어업 競爭力強化와 農漁村生活與件改善 및 농어민 福祉增進을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지원
- '99~2004년까지 「2단계 투융자개선」을 수립 농업경쟁력강화 및 구조개선에 집중 투자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94.8~12월간 총 13건)

-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제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약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축·임협법, 농어촌정비법(제정), 산림법 등 13개 법률

(4) '95년이후 제정된 관계법률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 '99.2.5)
- 농업·농촌기본법(법률 제5758호 '99.2.5)

V. 他部處 所管 特別法 施行關聯 協定과 法令 現況

1. 第3條(協定상의 權益確保)

□ 特別法 規定 □

第3條(協定상의 權益確保) ①政府는 協定の 기본원칙에 따라 權利와 義務를 行한다.

②政府는 協商의 結果가 協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協定 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品目の 國內 被害가 클 경우 協定節次에 따라 이를 修正하기 위한 協商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 WTO 협정상의 양허재협상 추진요건과 절차

(1) 특정산품의 수입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로서의 긴급조치

가) 근거규정 : (GATT 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나) 조 건

- 특정산품의 수입이 국내의 동종 또는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고 회원국이 판정한 경우에 발동가능

〈Agreement on Safeguards, 제2조 (Conditions)〉

1. A Member¹ may apply a safeguard measure to a product only if that Member has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that such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its territor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bsolute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to cause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다) 절차

- 수입상황 및 피해여부의 조사→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판정→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

※ 긴급한 상황인 경우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가능

라) 긴급조치의 내용

- 피해구제조치에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해당 양허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철회, 수정
- 단, 잠정적인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200일내에서 관세인상만 가능(수량제한 불가)
- 존속기간 : 4년, 단 필요한 조건 충족시 총 8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GATT 1994. 제19조〉

1. (a) If, as a result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of the effect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a contracting party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ariff concessions, any product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o cause or threaten serious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in that territory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the contracting party shall be free, in respect of such product, and to the extent and for such time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such injury, to suspend the obligation in whole or in part or to withdraw or modify the concession.

마) 보상양허협약

-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상응한 보상양허를 이해당사국과 협의하여 제공
-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바) 통보 및 협의

-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개시 및 사유, 피해, 피해우려 판정, 시행 및

적용기간 연장 등을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

(2) 특정상황에 기인한 양허재협상

가) 근거규정 : GATT 제28조제4항

나) 조 건

- 특정상황(in special circumstances)이 발생하여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특정상황”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재협상을 추진하는 국가가 입증해야할 문제임.

〈GATT 1994. 제28조 4항〉

4.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t any time, in special circumstances authorize a contracting party to enter into negotiations for modification or withdrawal of a concession included in the appropriate Schedule annexed to this Agreement subject to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conditions.
- (a) Such negotiations and any related consultation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e Article.
 - (b) If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rimarily concerned is reached in the negotiation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 of this Article shall apply.

다) 절 차

- 양허재협상 승인신청(30일내에 협상개시 승인여부 결정)
 - 최초 교섭국, 주요공급국, 실질 이해당사국과의 협의(60일내), 보상영허제공과 합의→양허수정 또는 철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양허수정 또는 철회가능 단, 교역상 대국은 상응한 보복조치 권리보유

나. 우리나라의 輸入에의한 産業被害 救濟措置 關聯法令

法令名	關 聯 條 文
<p>關稅法 (’90. 12. 31 개정) (財政經濟部 所管)</p>	<p>第43條의9(讓許의 撤回 및 修正) ①政府는 外國에 있어서의 價格의 低落 기타 豫想하지 못하였던 事情의 變化 또는 條約上의 義務의 履行으로 인하여 特定物品의 輸入이 增價됨으로써 이와 同種의 物品 또는 直接 競爭관계에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國內生産者에게 重大한 被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契約에 의하여 關稅의 讓許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條約에 의하여 特定物品에 대한 讓許를 撤回 또는 修正하여 이 法에 의한 稅率 또는 修正후의 稅率에 의하여 關稅를 賦課하는 措置 2. 特定物品에 대하여 第1號의 措置를 하고자 하거나 그 措置를 한 경우에는 당해 條約에 의한 協議에 따라 그 物品 이외에 이미 讓許한 物品의 關稅率을 修正하거나 讓許品目을 追加하여 새로 關稅의 讓許를 하고 修正 또는 讓許한 후의 稅率을 適用하는 措置 <p>②第1項第2號의 措置는 同項第1號의 措置에 대한 補償으로서 필요한 범위안에 限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時期·內容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對外貿易法 (’90. 12. 31 전문 개정) (産業資源部 所管)</p>	<p>第26條(特定物品의 輸入增加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調査申請)</p> <p>①國內産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國內産業에 利害關係가 있는 者 및 당해 國內産業을 管掌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委員會(이하 “貿易委員會”라 한다)에 당해 特定한 物品의 輸入 또는 貿易 및 流通서비스의 供給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被害를 調査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特定한 物品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 또는 직접적인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競爭關係에 있는 物品을 生産하는 國內産業이 심각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p> <p>2. 外國人(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으로서 그 株式 또는 持分の 2分の 1 이상을 外國人이 소유하고 있는 法人을 포함한다)에 의한 貿易·流通서비스의 供給增加로 인하여 同種의 貿易·流通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貿易·流通서비스를 供給하는 國內産業이 深刻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p> <p>3. 國內에서 보호되는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權 및 半導體直接回路의 配置設計權을 침해하는 物品의 輸入으로 인하여 당해 物品과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이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産業에 利害關係가 있는者의 범위 및 申請의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27條(特定物品의 輸入增加등에 의한 國內産業被害의 調査) ①貿易委員會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申請日부터 30日 이내에 調査開始 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貿易委員會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거나 第35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특정한 物品의 輸入 또는 貿易·流通서비스의 供給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被害를 調査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國內産業에 대한 被害調査를 開始한 때에는 그 調査의 開始日부터 120日 이내에 당해 國內産業에 미치는 被害의 유무를 判定하여야 한다. 다만, 그 調査內容이 복잡하거나 申請人이 正當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期間의 延長을 申請한 경우에는 120日의 범위내에서 調査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28條(限時的 輸入制限의 建議등) ①貿易委員會는 國內産業에 대한 被害調査의 結果 國內産業에 미치는 被害가 있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判定日부터 45日이내에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이하 “救濟措置”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建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入物品의 數量 제한 2. 關稅率의 調整 3. 관계法令의 規定에 의한 工業·農林水産業·鑛業·中小企業 및 技術에 대한 지원 4. 削除 <99·2·8> 5. 特定物品 또는 特定貿易去來者에 대한 輸入의 중지 또는 금지 (第26條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國內産業의 救濟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p>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濟措置를 建議 받은 때에는 45日이내에 救濟措置 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貿易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利害當事國과의 協議, 法令의 改正등 救濟措置의 施行을 위한 準備措置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③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救濟措置를 하는 때에는 國際通商關係 및 國民經濟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救濟措置를 한 경우 그 救濟措置의 原因이 되는 사실이 消滅되는 등 救濟措置를 解除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救濟措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貿易委員會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第29條(暫定措置) ①貿易委員會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중이라도 긴급히 救濟措置를 하지 아니하면 調査의 대상이되는 國內</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産業이 回復할 수 없을 정도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暫定적으로 第28條第1項제2號에 해당하는 救濟措置를 하여 줄 것을 建議할 수 있다.</p> <p>②第28條第2項 本文·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暫定적인 救濟措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30條(再檢討) ①貿易委員會는 第28條第2項 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이 행한 救濟措置가 國內産業에 미치는 영향 및 效果등을 檢討하여 當해 救濟措置의 內容의 변경·解除 또는 適用期間의 延장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建議할 수 있다.</p> <p>②第2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다. 농림수산물 양허재협상 추진조건 및 절차

(1) 전제조건

- 특정 농림수산물 양허의무 이행과정에서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수입가격의 현격한 하락으로 동종산품 또는 실질적인 경쟁상품 생산 농어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

(2)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유형

○ 관세화한 농산물

- 1차 조치 : 농산물협정 제5조와 관세법 제12조 3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부과

* '99.10. 7 수입마늘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85% 부과조치

- 2차 조치 : 피해구제 효과가 없을 경우 → 제28조에 의한 양허재협상 추진

○ 관세화 이외 농산물 및 수산물, 임산물

- 1차 조치 : 양허관세 범위내에서 조정관세 등 관세인상

- 2차 조치 : Safeguard 협정과 대외무역법 제4항(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절차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조치
 - 양허의 정지, 수정, 철회등 필요한 조치

(3) 추진절차

- 농림수산물 수입상황, 수입가격동향과 국내생산 품목의 수급·가격 동향을 연중 파악하고,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관계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양허관세 인상등 피해구제조치가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물 수입관리체계를 강화
 - * 관세화품목의 특별긴급관세는 부과요건에 해당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세관에서 직접부과(제6조 관련자료참조)
- 수입으로 인한 영향분석 결과 구체적인 산업피해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문가 및 이해관계 생산자 단체등과의 보상양허 품목선정등에 관한 협의와 아울러
 - 관계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범시행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와 양허재협상추진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협의 추진
- 이에 선행하여 생산자단체는 계량화가 가능한 수입으로 인한 영향평가체제의 구축필요

2. 第4條(補助金에 대한 措置)

□ 特別法 規定 □

第4條(補助金에 대한 措置) 會員國이 規定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補助金등에 의하여 輸出을 하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가. WTO 농업협상상의 보조금 허용 수준과 의무위반시 대응조치

구 분	허용수준	의무위반에 대한 대응조치
1) 국내보조	1) Total AMS범위내의 감축대상 보조 2) 감축대상보조 중 개도국 우대 보조 3) 5%(개발도상국은 10%)의 De-minimis 이내 보조 4) 생산제한정책하의 보조 5) 허용보조	1) 양허 의무위반으로 간주한 분쟁대상 2)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을 준용한 상계조치 대상
2) 수출보조	1) 감축약속 범위내의 수출보조 2) 수출보험·수출신용 및 수출신용보증 3) 개도국의 운송비, 유통비 보조	위와 동일

나. 보조금 규정위반에 대한 협정상의 상계조치 절차(보조금 상계조치 협정 제5부)

1) 당사국의 조사

-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정부당국의 직권에 의함.
- 수출자, 외국생산자, 이해당사회원국 증거자료 제출

2)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3) 피해의 판정→이해당사국의 필요조치이행→분쟁종료

4) 상계관세 부과 및 징수(이해당사국의 보조금이 철회되지 아니할 경우)

- 부과범위 : 수출 전상품 단위당 보조금 범위내
- 부과대상 : 보조금 지급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
- 부과기간 : 필요한 기간과 범위내(최대5년)

다. 우리나라의 상계관세부과 관법령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關稅法 (’93. 12. 31, ,’95. 12. 6, ,’98. 12. 28 개정) (財政經濟部 所管)</p>	<p>第13條(相計關稅) ①外國에서 製造·生産 또는 輸出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補助金 또는 獎勵金(이하 “補助金등”이라 한다)을 받은 物品의 輸入으로 國內産業이 實質的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國內産業開發이 實質的으로 지연(이하 이條에서 “實質的인 被害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國內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으로 그 物品과 輸出者 또는 輸出國을 지정하여 당해 物品에 대하여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關稅외에 당해 補助金 등의 金額이하의 關稅(이하 “相計關稅”라 한다)를 추가하여 賦課할 수 있다.</p> <p>②財政經濟部 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計關稅의 賦課與否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物品이 補助金등을 받아 輸入되어 國外産業에 實質的인 被害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約束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約束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情報)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物品의 輸出者 또는 輸出國 및 기간을 정하여 補助金등의 推定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暫定相計關稅의 賦課를 명하거나 擔保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條에서 “暫定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計關稅의 賦課與否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어 補助金등의 지급사실과 보조금등을 받은 物品의 수입으로 인한 國內産業被害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物品의 輸出國 政府 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당해물품에대한 補助金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補助金등의 國內産業에 대한 被害效果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約束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輸出者는 輸出國政府의 同意를 얻어 補助金등의 國內産業에 대한 被害效果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價格을 수정하거나 輸出을 중지하겠다는 約束을 제의할 수 있다.</p>

라. 협정 및 관계법 규정에 따른 상계조치 조건과 향후추진계획

(1) 상계관세부과조건

- ① WTO 농업협정을 위반하여 허용수준을 초과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협정규정에 합치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농업협정에 의거 대응조치가 자제됨.)
- ② 동 품목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제품 생산자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될 때

(2) 대응조치계획

- ① 보조금 지급 품목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 상계조치에 필요한 조사개시 및 피해구제조치 추진
 - 재정경제원에 피해구제조사등 필요조치 요청
- ② 보조금 지급 품목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경우
 - 양허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해당사국간 분쟁절차에 참여 보조금 철폐 요구등 권익 행사
- ③ 이러한 피해구제조치가 즉각 취해지도록 각국의 보조금 감축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이행점검체제를 구축

(1) 國內補助支援의 一般原則

〈國內補助 減縮約束의 性格 : 第6條 1項〉

1. The domestic support reduction commitments of each Member contained in Part IV of its Schedule shall apply to all of its domestic support measures in favour of agricultural producers with the exception of domestic measures which are not subject to reduction in terms of the criteria set out in this Article and in Annex 2 to this Agreement. The commitments are expressed in terms of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nd "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減縮約束이 提示되지 아니한 農業生産者 補助의 上限 : 第7條2(b)〉

(b) Where no Total AMS commitment exists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the Member shall not provide support to agricultural producers in excess of the relevant de minimis level set out in paragraph 4 of Article 6.

(2) 輸出補助 支援의 一般原則

〈減縮約束의 性格 : 第9條2(a)〉

2. (a)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b), the export subsidy commitment levels for each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s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represent with respect to the export subsidies list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 in the case of budgetary outla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level of expenditure for such subsidies that may be allocated or incurred in that year in respect of the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concerned, and

(ii) in the case of export quantity reduction commitments, the maximum quantity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in respect of which such export subsidies may be granted in that year.

(3) 農業補助金 規定의 義務履行 및 不履行에 관한 措置

〈第13條 : 적절한 자재〉

(b) domestic support measures that conform full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is Agreement including direct payments tha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5 thereof, as reflected in each Member's Schedule, as well as domestic support within de minimis levels and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2 of Article 6, shall be :

(i) exempt from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unless a determination of injury or threat there of is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GATT 1994 and Part V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due restraint shall be shown in initiating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

(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paragraph 1 of Article XVI of GATT 1994 or articles 5 and 6 of the Subsidie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grant support to a specific commodity in excess of that decided during the 1992 marketing year ; and

(i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non-violation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the benefits of tariff concessions accruing to another member under Article II of GATT 1994, in the sense of paragraph 1(b) of Article XXIII of GATT 1994, provided that such measures do not grant support to a specific commodity in excess of that decided during the 1992 marketing year ;

(c) export subsidies that conform fully to the provisions of Part V of this Agreement, as reflected in each Member's Schedule, shall be :

(i) subject to countervailing duties only upon a determination of injury or threat there of based on volume, effect on prices, or consequent imp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fo GATT 1994 and Part V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due restraint shall be shown in initiating any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 and

(ii) exempt from actions based on Article XVI of GATT 1994 or Articles 3, 5 and 6 of the Subsidies Agreement.

3. 第5條(民族內部去來)

□ 特別法 規定 □

第5條(民族內部去來) 南北韓間의 去來는 民族內部去來로서 協定에 의한 國家間의 去來로 보지 아니한다.

가. 南北韓間 去來에 관한 法律 및 國際協約

法 令 名	關 聯 條 文
憲法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90. 8. 1 제정) (통일부 所管)	<p>第1條(目的) 이 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 등을 原因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經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생략) <p>第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を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正當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법을 適用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的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p> <p>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政府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的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력과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的 協助 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p>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자(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p> <p>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部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の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p>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部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의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p> <p>②統一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p> <p>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p> <p>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法律을 準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外國煥管理法 2. 外資導入法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3. 韓國輸出入銀行法</p> <p>4. 輸出保險法</p> <p>5. 對外經濟協力基金法</p> <p>6. 法人稅法</p> <p>7. 所得稅法</p> <p>8. 租稅減免規制法</p> <p>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關稅等還給에 관한特別法</p> <p>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p>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90. 8. 9 제정 '98. 10. 23, '98. 12. 31 개정)</p>	<p>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p> <p>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7. (삭제 '98. 12. 31)</p> <p>8. 교육세법</p> <p>9. 식물방역법</p> <p>10. 가축전염병예방법</p> <p>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p> <p>⑤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⑥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p>
<p>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1992. 2. 19 발효)</p>	<p>第15條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國際聯合憲章 (1991. 9. 18 大韓民國에 대하여 발효, 外交通商部 所管)</p>	<p>제2조 이 기구 및 그 會員國은 第1條에 명시한 目的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다음의 原則에 따라 행동한다.</p> <p>1~6 : 생략</p> <p>7. 이 憲章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國際聯合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事項을 이 憲章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會員國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第7長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p> <p>第103條 國際聯合會員國의 憲章상의 義務와 다른 國際協定상의 義務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義務가 우선한다.</p>

나.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 규정

(1) 세계무역기구설립 협정의 적용범위 : 회원국간 무역관계에 적용

<제2조(세계무역기구의 범위)>

1.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문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무역관계의 수행을 위한 공동의 제도적인 틀을 제공한다.
2. 부속서 1, 2 및 3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다자간무역협정”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 또한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이하 “복수국간무역협정”이라 한다)는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여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9조(의사결정) : Waiver에 관한 사항>

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다.

4. 第6條(特別緊急關稅)

特別法 規定

第6條(特別緊急關稅) 農林水産物の 輸入物量이 急增하거나 國際價格이 현저히 下落하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讓許한 稅率을 초과하여 特別緊急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

가. WTO 농업협정 규정 요지(농업협정 제5조)

(1) 특별긴급관세부과 대상품목

- 관세화한 농산물중 양허표에 SSG(Special Safeguard)로 표시한 품목에 한함

(2) 발동요건

가) 물량기준 SSG

- 발동요건 : 품목별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발동물량을 초과하고 발동물량이 최근 3개년간 평균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할 경우
 - 발동물량 : 품목별 기준발동계수(BTL) × 최근 3개년간 평균수입물량 + 최근년도 국내소비량 변화분

BTL(Base Trigger Level) : 수입품목의 시장접근기회(MAO)에 의해 결정

M A O	B T L
MAO ≤ 10%	125%
10% < MAO ≤ 30%	110%
MAO > 30%	105%

- 수입품목의 MAO(Market Access Opportunity)가 높을수록 기준발동계수를 낮추어 발동물량조건을 완화함.
- 최근연도 국내소비량 변화분을 고려토록 하므로써 국내소비량이 증가한 경우에는(생산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가량 만큼 발동물량을 높이도록 함.
- 추가관세부과
 - 부과상한선 :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이하
 - 부과기간 : 당해연도말까지만 부과 가능(1년 주기)
 - 부과예외대상 : CMA · MMA물량은 추가관세 부과불가
- 발동방법 및 통보의무등
 - 실시 사전 또는 사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에 협의기회 부여

- SSG발동시 일반산업피해 구제제도(SG) 원용불가 및 상대국의 SG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불가

나) 가격기준 SSG

- 발동요건 : 품목별 CIF 수입가격과 발동가격의 차이(가격차)가 10% 이상인 경우
 - 발동가격(trigger price) : '86~'88 3년간의 평균 CIF 수입가격
 - 기간적용의 특례 : 부패가능하고 계절성이 있는 품목은 다른기간 동안의 참조가격 사용가능
- 추가관세부과
 - 부과방법 : 품목별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가격차에 따른 구간별 누진합산 부과

가 격 차	SSG 관세
발동가격의 10% 이하	부과 안함
10% 초과 40% 이하	10%초과분 가격차의 30%(가)
40% 초과 60% 이하	40%초과분 가격차의 50%+(가)⇒나
60% 초과 75% 이하	60%초과분 가격차의 70%+(나)⇒다
75% 초과	75%초과분 가격차의 90%+다

- 부과예외대상
 - CMA·MMA 물량은 SSG 부과 불가
 - 수입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SSG 적용 불가(가능한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 발동방법 및 통보의무등
 - 첫 번째 발동조치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에 협의기회 부여
 - SSG 발동시 SG 원용불가 및 상대국의 SG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 불가

나. 우리나라의 특별긴급관세 운용법령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關 稅 法 (’94. 12. 22 개정) (재정경제부 소관)</p>	<p>第12條의3(農林畜産物에 대한 特別緊急關稅) ①第43條의 8의 規定에 의하여 國內外價格差에 상당한 率로 讓許한 農林畜産物의 輸入物量이 급증하거나 輸入價格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許한 稅率을 초과하여 關稅를 賦課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의 적용을 받을 物品·稅率·適用期限과 數量등은 總理令으로 정한다.</p>
<p>관세법시행령 (’94. 12. 31 개정)</p>	<p>제4조의19(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당해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p>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기준발동계수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연도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으로 한다. 다만,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10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05</p> <p>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준발동계수는 100분의 125</p> <p>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실행관세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p> <p>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특별긴급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p> <p>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더한 금액</p> <p>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더한 금액</p> <p>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율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을 각각 더한 금액</p> <p>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할 때 3년보다 짧은</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할 때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p> <p>⑥법 제43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p> <p>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p> <p>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물품의 세번·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당해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수입량 및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3. 인상하여야 할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기타 참고 사항 <p>⑨제4조의16제2항의 규정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복관세”는 “특별긴급관세”로 본다.</p>
<p>관세법제12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총리령 '94. 12. 31 공포, 재경부령으로 '98. 12. 28 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3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4조의23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1의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p> <p>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 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 나의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p> <p>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 품의 시장접근 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 관은 영 제4조의23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특별긴급관세부 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 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 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 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날 및 이 날 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영 제4조의23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 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p> <p>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로부터 과 거 6일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 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 부과물량, 원산지, 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 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별표1] 및 [별표2] 생략(다음의 적용대상 품목참조)</p>

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현황

(1) 2000년 부과대상품목 : 45개 품목

○ 물량기준 : 45개 품목(기준물량, 관세율)

- 녹두·팥(23,373톤, 846%, 586%), 고구마 전분(16,070톤, 335%), 낙화생(18,924톤, 320%)등

○ 가격기준 : 위 품목중 12개 품목은 기준가격 병행

- 메밀(221원/kg), 밀전분(604원/kg), 고구마전분(425원/kg) 등

(2) 부과실적

구 분	품 목	건 수	부과액
		건	백만원
'95	땅콩, 메밀, 녹두 등 8개품목	103	5,578
'96	땅콩, 고구마전분, 밀전분 등 8개 품목	200	9,519
'97	고구마전분, 땅콩, 녹두 등 7개 품목	175	9,241
'98	고구마전분, 땅콩, 녹두 등 7개 품목	79	3,073
'99	녹두, 고구마전분, 땅콩 등 6개 품목	343	11,390

〈 2000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 〉

일련번호	품목번호	품명	물량기준		가격기준	
			기준발동 물량(톤)	특별긴급 관세율(%)	기준가격 (원/kg)	특별긴급 관세
1	0713.31.9000	기타 녹두(종자용 제외)	23,373톤	846	313	※영제4조 의23제1항
2	0713.32.9000	기타 팥(종자용 제외)		586	288	
3	1008.10.0000	메밀	1,161톤	356	221	제2호에의 한금액
4	1008.90.0000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및 카나리시드의 것을 제 외한다)		1,114	132	
5	1102.90.9000	기타 곡물(쌀, 호밀, 옥수 수, 밀, 메슬린 및 보리의 가루를 제외한다)	15톤	1,114		
6	1103.11.0000	밀의 분쇄물 및 조분		401		
7	1103.12.0000	귀리의 분쇄물 및 조분		772		
8	1103.19.9000	기타 곡물의 분쇄물 및 조분(밀, 귀리, 옥수수, 쌀 및 보리의 것을 제외)		1,114		
9	1103.21.0000	밀의 펠리트		401		
10	1103.29.9000	기타곡물의 펠리트(밀, 쌀 및 보리의 것을 제외)		1,114		
11	1104.12.0000	귀리의 압착 또는 플레이 크상의 것		772		
12	1104.19.9000	기타곡물의 압착 또는 플 레이크상의 것(보리, 귀 리 및 쌀의 것을 제외)		1,114		
13	1104.22.0000	귀리의 기타 가공품		772		
14	1104.29.1000	울무의 기타 가공품		1,114		
15	1104.29.9000	기타곡물의 기타 가공품 (보리, 귀리, 옥수수 및 울무의 것을 제외)		1,114		

외 면 관 세 율	품목번호	품 명	물량기준		가격기준	
			기준발동 물량(톤)	특별긴급 관세율(%)	기준가격 (원/kg)	특별긴급 관세
16	1105.10.0000	감자의 분·조분과 분말	90톤	423		
17	1105.20.0000	감자의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423		
18	1108.11.0000	밀전분	393톤	70	604	
19	1108.19.9000	기타전분(밀, 옥수수, 감자, 매니옥 및 고구마의 것 제외)		1,114	132	
20	1108.20.0000	이눌린		1,114	132	
21	1108.19.1000	고구마전분	16,070톤	335	425	
22	1201.00.9000	대두	333,222톤	678 또는 1,330원/kg	198	
23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8,924톤	320	638	
24	1202.20.0000	낙화생(탈각)		320	638	
25	1211.20.1100	수 삼	24톤	310		
26	1211.20.1210	본삼(백삼)		310		
27	1211.20.1220	미삼(백삼)		310		
28	1211.20.1240	잡삼(백삼)		310		
29	1211.20.1310	본삼(홍삼)		1,050		
30	1211.20.1320	미삼(홍삼)		1,050		
31	1211.20.1330	잡삼(홍삼)		1,050		
32	1211.20.2210	홍삼분		1,050		
33	1211.20.2220	홍삼타브렛·캡슐		1,050		
34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 브렛 또는 홍삼캡슐제외)		1,050		

이 면 세 율	품목번호	품 명	물량기준		가격기준	
			기준발동 물량(톤)	특별긴급 관세율(%)	기준가격 (원/kg)	특별긴급 관세
35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050		
36	1211.20.9200	인삼종자		1,050		
37	1211.20.9900	기타인삼(인삼근, 인삼분 말, 인삼잎, 인삼줄기 및 인삼종자 제외)		1,050		
38	1302.19.1210	홍삼정		1,050		
39	1302.19.1220	홍삼정분		1,050		
40	1302.19.1290	홍삼의 액즙과 엑스 (홍삼정·홍삼정분제외)		1,050		
41	2106.90.3021	홍삼차		1,050		
42	2106.90.3029	기타홍삼제품류 (홍삼차제외)		1,050		
4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 (홍삼의 것)		1,050		
44	2301.10.1000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 및 펠리트	5,032톤	12	252	
45	2309.90.1091	기타배합사료 (대용유의 것)	3,005톤	98		
계			45개품목		12품목	

5. 第8條(國民健康의 보호)

□ 特別法 規定 □

第8條(國民健康의 보호) 食品, 그 容器 기타 輸入物品이 檢疫法·食品衛生法·植物防疫法, 家畜傳染病豫防法등 法令이 정하는 細菌·病害蟲 또는 有害物質등을 함유하여 國民健康을 害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政府는 그 輸入物品이나 이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功된 物品 또는 그 輸入物品을 製造·加工한 製造元의 類似物品에 대하여 協定과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요지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 SPS 협정의 개요

- SPS 협정은 총 14개조항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SPS조치란 식물·동물의 병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간·동물 또는 식품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SPS조치라 함.
- SPS협정은 인간·동물 및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 수준 설정과 수입상품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등 보호조치 권한을 인정함.
- SPS협정은 특정 SPS 조치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이 조치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적이고 명확한 위험을 막도록 보장하기 위한 다수의 일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SPS국제기준은 관련기관에서 제정)

※ 국제기준 제정기구

- 식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 동물 : 국제수역사무국(OIE)

- 식물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 SPS협정은 SPS조치가 과학 및 위험평가에 근거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SPS 협정은 정당한 조치와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사이에 SPS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SPS협정에서는 고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음.

(2) 협정의 주요내용

가)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각국 정부가 SPS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각국이 위생 보호상 필요요건만을 부과토록 하고, 동조치 적용시 여타 회원국에 차별 적용치 않도록 규정

나) 조화(Harmonization)

- 동식물검역 국제기구(OIE, IPPC) 및 식품위생 국제기구(Codex)가 개발하는 국제 기준을 회원국이 널리 사용하여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
- 각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 유지를 위하여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SPS조치를 유지할 수있도록 규정

다) 동등성(Equivalence)

- 수출국이 수입국의 동식물검역 및 식품위생 보호수준에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의 SPS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농축산물에 있어 병해충의 도입·정착·전파 가능성 평가와 식품·음료 및 사료에 있어 첨가제, 오염물질 및 독소등이 인간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현재 국제기술기구(Codex, OIE, IPPC)가 위험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마) 투명성(Transparency)

- 각국 정보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아니한 SPS조치의 신설

및 제정시는 WTO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WTO협정 발표이후 제정된 규정에 한하여 통보의무가 있음.

바) 분쟁해결

- 각국은 SPS조치와 관련한 무역분쟁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양자간 협의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해당정부는 WTO에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분쟁해결위원회(Panel) 구성을 요구할 수있음.
- 이 Panel은 분쟁당사자 및 관련 기술전문가 또는 기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됨.

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SPS위원회) 설치

- 본 협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WTO회원국간의 협의·협상장려, 정보의 교환과 관련 국제기술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국제기준사용장려등의 기능을 수행함.

아) 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 개도국은 WTO협정 발효이후 2년동안 “수입상품”에 본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으며, 2년 경과후에도 전문지식, 하부구조, 재정등의 부족으로 본 협정적용이 어려울 경우 SPS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유예기간연장 부여가 가능함.
- 각국 정부는 수입국이 적정 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있으면 개도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SPS조치의 더 긴 준비적용 단계를 부여하도록 권고함.

(3) SPS협정 관련 통보절차

- 각국 정부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아니한 동식물검역 및 식품위생조치의 신설 및 제정시에는 WTO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

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호를 목적으로한 수입규제 관련 법령(예)

(1) 법 령

소 관	관 계 법 령 (예)	비 고
보건복지부	1) 약사법, 2) 마약법, 3) 대마관리법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5) 식품위생법 6) 검역법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품목별 수입규제 시행
농 립 부	1) 가축전염병 예방법 2) 농약관리법	"

(2) 수입규제 방법

- 개별법령을 근거로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수입요령을 고시하여 운용

〈통합공고상의 수입요령(예시)〉

제5조(품목별 수출입요령) ①요건확인품목은 별표 I, II, III, IV, V, VI, VII, VIII 등과 같으며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3-1-3조 및 이 고시가 정한 당해물품의 요건을 확인한 후에 수출입의 승인을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및 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할 요건이 수출입 승인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서 별표의 요건확인품목으로 개기되지 아니한 물품 및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을 제7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과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별도규정 품목)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은 별표 I, II의 수출입요령에 개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각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1. (마약류) 마약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II에 계기된 품목중 HS 1207, 1211, 1302, 2939 해당물품과 별표 III에 계기된 품목으로 하며 이 품목의 수입은 마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수입업자가 마약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은 수출할 수 없다.
2.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표 IV에 계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품목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을 할 수 있다.
3. (대마)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대마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마연구자가 대마관리법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수 있다.
4. (식품류) 별표 II에 계기되지 아니한 식품류는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와 제8조에 의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
 - 가.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미숙한 것
 - 나.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된 것
 - 다. 평균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라. 불결하거나 이물의 혼입 또는 첨가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병육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肉骨), 유즙(乳汁), 장기(臟器) 또는 혈액
 -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화학적 합성품이외의 화학적합성품과 이를 함유하는 제제(製劑)
 - 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

5. (검역물품) 검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Ⅱ의 검역대상물품의 검역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동물 검역절차에 포함시켜 실시할 수 있다.

가. 동물의 모발, 모피, 강모(剛毛) 또는 우모(牛毛)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검역조치에 의하여 비탈저균아포가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것

나. 묘견(描犬), 원류(猿類) 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 진단서가 없는 것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야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및 원제에 한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에 갈음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농림부소관 법령

法 令 名	關 聯 條 文
가축전염병 예방법 ('96. 8. 8 개정)	第21條(輸入禁止)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件은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研究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物件과 航空機 또는 船舶의 단순기항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輸入禁止地域을 경유한 指定檢疫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1. 農林部長官이 지정·告示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發送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指定檢疫物</p> <p>2. 動物의 傳染性疾病의 病原體</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을 許可할 때에는 輸入方法, 輸入된 指定檢疫物등의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第24條(輸入檢疫) ①指定檢疫物을 輸入한 者는 지체없이 動物檢疫機關의 長에게 申告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疫官의 檢疫을 받아야 한다.</p> <p>②檢疫官은 指定檢疫物 이외의 物件이 家畜傳染性疾病의 病原體에 의하여 汚染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輸入 후 지체없이 그 物件을 檢疫하여야 한다.</p> <p>③檢疫官은 檢疫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關稅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保稅區域 貨物管理者의 요청이 없어도 保稅區域에 장치된 携帶檢疫物등 檢疫物에 대한 檢疫을 실시할 수 있다.</p>
<p>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5. 6. 11 전문개정 '97. 5. 10 개정)</p>	<p>제15조(지정검역물)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2. 개, 고양이 3. 토끼 4. 닭, 칠면조, 오리, 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 (고래를 제외한다)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7. 정액 및 수정란</p> <p>8. 원유</p> <p>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소시지, 베이컨등 수육가공품, 난백·난분등 난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p> <p>10. 가공 또는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비늘, 뇌, 골수, 오물, 추출물, 육골분 및 우모분</p> <p>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p> <p>12.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p> <p>13.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p> <p>②제1항제9호·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의2(시험연구용 수입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험연구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3(수입금지지역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①그 지정검역물을 싣고 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 하는 경우</p> <p>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등이나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p> <p>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국내단순경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할 경우</p> <p>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하는 경우.</p> <p>제18조(검역신청과 검역의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수출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역물이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인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p> <p>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④법 제24조, 법 제26조제2항·제4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은 별표 4에 의하여, 검역기간은 별표 5에 의한다.</p> <p>⑤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흥행·경기·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조류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p>農藥管理法 (’95. 12. 6 제정 , ’99. 3. 31 개정)</p>	<p>第3條(營業의 登錄등) ①製造業·原劑業 또는 輸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第8條(國內製造品目的 登錄) ①製造業者가 農藥을 國內에서 製造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品目別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研究機關에서 실시한 農藥의 藥效·藥害·毒性 및 殘留性에 관한 試驗의 成績을 기재한 書類(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農藥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의 만료로 再登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を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成績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申請人의 姓名(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代表者의 姓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住所·住民登錄番號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2. 農藥의 명칭</p> <p>3. 理化學的 性狀 및 有效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p> <p>4. 品目의 製造工程</p> <p>5. 容器 또는 포장의 종류·材質 및 그 容量</p> <p>6. 適用病害蟲 및 農作物의 범위, 農藥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p> <p>7. 藥效保證期間</p> <p>8. 사람과 家畜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解毒방법</p> <p>9. 水棲生物에 유해한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p> <p>10. 引火性·爆發性 또는 皮膚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農藥에 대하여는 그 내용</p> <p>11. 보관·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p> <p>12. 製造場의 所在地</p> <p>13.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製造品目의 登錄에 필요한 사항</p> <p>第16條(原劑의 登錄) ①原劑業者가 原劑를 생산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劑를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研究機關에서 실시한 原劑의 理化學的 分析 및 毒性試驗成績을 기재한 書類를 첨부하여 原劑의 試料와 함께 農村振興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劑를 登錄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類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免除할 수 있다.</p> <p>1. 申請人의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p> <p>2. 原劑의 명칭·理化學的 性狀 및 主成分 기타 成分의 종류와 각각의 含有量</p> <p>3. 原劑의 合成·製造工程</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4 引火性·爆發性등 위험이 있는 原劑는 그 내용</p> <p>5. 製造場의 所在地</p> <p>6.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原劑登錄에 필요한 사항</p> <p>第17條(輸入農藥등의 登錄) ①輸入業者는 農藥 또는 原劑를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의 종류별로 農村振興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用 또는 學術研究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와 동일한 農藥의 品目 또는 原劑를 동일한 製造業者로부터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登錄에 갈음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村振興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農藥의 品目登錄의 申請, 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등, 品目登錄證의 교부, 品目登錄의 有效期間, 品目登錄者 등의 地位承繼申請에 대한 品目變更登錄, 職權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을, 輸入原劑의 登錄, 輸入原劑登錄者의 地位承繼, 申請에 의한 輸入原劑의 變更登錄, 職權에 의한 輸入原劑登錄의 取消에 관하여는 第16條의 規定을 各各 準用한다. 이 경우 “製造業” 또는 “原劑業”은 “輸入業”으로, “製造業者” 또는 “原劑業者”는 “輸入業者”로, “農藥”은 “輸入農藥”으로, “原劑”는 “輸入原劑”로 본다.</p> <p>第30條(適用排除) ①製造業者 또는 原劑業者가 輸出目的으로 農藥 또는 原劑를 製造하여 이를 輸出하는 경우 그 農藥 또는 原劑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이 法에 의한 農藥 및 原劑에 대하여는 有害化學物質管理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농약관리법 시행 규칙 (’96. 12. 7 전문개정, '99. 8. 23 개정)</p>	<p>제3조(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신고필증 사본(수입업에 한한다)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1조(수입농약등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2조 내지 제19조나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수입농약의 품목 또는 수입원제의 등록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22조(수입농약등의 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가 이미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 우리나라의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규제 정책의 실시
- 관련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통합공고(산업자원부 고시)로 고시하여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중임.

6. 第9條(環境의 보호)

□ 特別法 規定 □

第9條(環境의 보호) 特定物品의 輸入으로 인하여 사람·動物의 健康이나 植物의 成長을 害할 環境汚染의 危險이 있는 때에는 政府는 協定과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 또는 이를 原料로 하여 製造·加工된 物品에 대하여 그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WTO 협정규정과 논의동향

- 현행 GATT규정상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수입규제 조치는 인정되고 있으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한 수입규제는 용인하지 않고 있음.
- 다만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환경 관련 상표, 포장, 생산물 내용물의 요건 등의 기술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용가능함.

- 그러나 지구환경보전차원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및 관련제품의 비가입국과의 교역금지), 바젤협약(가입국과 비가입국간 규제대상 폐기물의 교역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 등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이 증가하고 있어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정책과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환경보호관련 주요 법령 및 수입규제 현황

(1) 환경보호관련 주요법령

法 令 名	關 聯 條 文
환경정책기본법 ('90. 8. 1 제정) (환경부소관)	<p>第20條(排出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騒音, 振動, 惡臭의 발생 및 廢棄物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p> <p>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環境의 汚染 또는 自然生態系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p> <p>第24條(自然環境의 保全)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과 生態系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을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均衡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25條(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의 基本原則에 따라 保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保全되어야 하며, 自然의 이용과 開發은 調和와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自然環境은 汚染과 훼손으로부터 保護되어야 하며 汚染되거나 훼손된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회복되어야 한다. 3. 野生動·植物은 保護되어야 하며, 그 種族은 보존되어야 한다.
<p>자연환경보전법 (’97. 8. 28 전문개정 '99. 2. 8 개정) (환경부소관)</p>	<p>第14條(國際的滅種危機種의 國際去來등의 規制) ①國際的滅種危機種(쉽게 識別할 수 있는 部分·派生物·加工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輸出·再輸出·搬出·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鳥獸保護및狩獵에 관한法律에 의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 國際的滅種危機種을 이용한 加工品으로서 藥事法에 의한 輸出·入許可를 받은 醫藥品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滅種危機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은 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外的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누구든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入 또는 搬入된 國際的滅種危機種임을 알면서 이를 賣買, 賣買의 알선, 接受, 占有, 所有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누구든지 適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國際的滅種危機種을 國外에서 捕獲, 採取, 購入하거나 國內로의 搬入 또는 搬入을 위한 알선·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39條(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輸入등) ①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사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이 國際的滅種危機種과 동일한 動·植物로서 第14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내지 ④削除<'99.2.8></p> <p>⑤第1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의 輸入 또는 搬入承認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40條(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등의 관리대책) ①누구든지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自然環境에 露出시키거나 棲息規模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p> <p>②環境部長官은 특정한 動·植物이 生態系의 均衡을 攪亂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적절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水道法 第5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捕獲·採取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生物種과 함께 捕獲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生態系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動·植物을 이전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를 告示하여야 한다.</p> <p>④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態系危害外來動·植物을 제거하기 위한 技術·製品의 開發, 天敵의 研究등을 위한 事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98. 2. 19 전문개정, '99. 3. 26 개정)	<p>제13조(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5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의하되,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II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의 검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를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농림부장관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번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중 살아있는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국·공립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는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검토 2. 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의 수출·입등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⑥환경부장관은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2. 거래 상대국, 동·식물의 명칭·수량·크기·종류 3. 승인서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⑦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등의 사본과 관계국에서 발행한 수출·입등의 승인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유해화학물질관리법 (’96. 12. 30 전문개정 '99. 2. 8 개정) (환경부소관)</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化學物質”이라 함은 元素 또는 化合物에 人爲적으로 反應을 일으켜 얻어진 物質과 自然狀態에서 생긴 物質을 抽出·精製한 것을 말한다. 2. “危害化學物質”이라 함은 有毒物·觀察物質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有害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3. “有毒物”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危害를 미칠 有害성이 있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4. “取扱制限有毒物”이라 함은 有毒物중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미치는 有害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5. “觀察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危害를 미칠 有害성이 우려되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第7條(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申請등)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化學物質에 대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의 有害性審査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有毒物 2. 觀察物質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環境部長官이 告示한 物質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물질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有害性審査를 申請하는 때에는 당해 化學物質의 毒性·分解性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研究機關에서 실시한 試驗의 結果를 기재한 書類(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11條(化學物質의 製造禁止등) ①環境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한 化學物質이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심각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試驗·研究 또는 審査用 試藥을 그 用途로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p> <p>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化學物質의 명칭과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③環境部長官은 有害化學物質의交易時事前通報承認節次에 관한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部屬書 Ⅲ에 規定된 化學物質 및 協約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協約當事國이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 준수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施行日 協約의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하는 날></p>
<p>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시행령 ('97. 6. 26 전문개정 '98. 12. 31 개정)</p>	<p>제4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의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폐기물관리법 (’91. 3. 8 전문개정, '95. 8. 4, '99. 2. 8 개정) (환경부소관)</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騒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感染性廢棄物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p>4의2. “感染性廢棄物”이라 함은 指定廢棄物중 人體組織등 摘出物, 탈지면, 實驗動物의 死體등 醫療機關이나 試驗·檢査機關등에서 排出되는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p>
<p>식물방역법 (’95. 12. 6 전문개정 '99. 2. 5 개정) (농림부소관)</p>	<p>第6條(輸入制限) ①輸入하는 植物등은 輸出國의 政府機關에 의하여 發給된 것으로서 檢査結果 規制病害蟲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檢査證明書 또는 그 寫本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植物등을 植物檢疫에 관한 政府機關이 없는 國家로부터 輸入하거나 휴대하여 輸入하는 경우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植物과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이 허용되는 物品 등은 郵便物로서 輸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港灣 또는 空港외의 場所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③植物과 第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이 許容되는 物品 등은 通常郵便物과 小包郵便物외의 郵便物로 輸入하지 못한다.</p> <p>④農林部長官은 外國의 特定地域에서 規制病害蟲이 발생하여 國內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病害蟲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에서 生産 또는 發送되었거나 그 地域을 경유한 植物등의 輸入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p> <p>⑤農林部長官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求한 檢査 또는 消毒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國家의 植物의 輸入을 制限할 수 있다.</p> <p>第7條(輸入禁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 등(이하 “禁止品”이라 한다)은 輸入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研究用이나 政府가 인정하는 國際博覽會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호의 植物에 서식하는 病害蟲을 死滅시키는 방법을 그 輸出國이 제시하고, 農林部長官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의 위험에 대한 分析·評價를 거쳐 國內植物에 被害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植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病害蟲危險에 관한 分析·評價結果 國內에 유입될 경우 國內植物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病害蟲이 분포되어 있는 地域에 생육하고 있는 植物과 당해 地域을 경유한 植物. 이 경우 對象病害蟲·對象地域 및 對象植物은 農林部 습으로 정한다.</p> <p>2. 有害動物 또는 有害植物</p> <p>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植物</p> <p>3.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植物 등의 容器·포장</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식물방역법 시행령 ('96. 12. 5 제정 '99. 7. 29 개정)	제10조(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허가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금지품수입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수입물량의 적정 여부 4. 당해 금지품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여부 및 금지품의 유출 기타 이에 준하는 위험을 야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96. 12. 7 전문개정 '99. 8. 10 개정)	제6조(검사증명서 등의 첨부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편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2.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물등 또는 병해충을 수입하는 경우 4.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5.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6.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분쇄·압착 또는 냉동 기타 밀폐포장에 의하여 가공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法 令 名	關 聯 條 文
	<p>제7조(수입이 허용되는 항만 또는 공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만 또는 공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임시입항허가를 받은 항만 2.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서울공항·대구공항 및 광주공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임시취항허가를 받은 공항 <p>제8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절차)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한다)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식물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되는 금지품의 사후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관에 규정된 국가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식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대상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의 경우를 제외한다.</p>

法 令 名	關 聯 條 文
종자산업법 ('95. 12. 6 제정) (농림부소관)	第9條(種子の 輸出入) ③農林部長官은 國內 生態系保護 및 資源保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子の 輸出·輸入 또는 輸入된 種子の 國內流通을 제한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97. 12. 31 제정)	제50조(수출입종자의 국내 유통제한) ①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의 수출·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국내유전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한 잡초종자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2)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한 수입규제정책의 실시

-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로 고시하여 운용중임